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6. 9.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2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8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8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9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9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10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2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37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38

5. 종합의견 ····· 39

6. 첨부자료 ····· 44

<참고자료 1> 대법관(김성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김성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김성수)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6. 9.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2. 심사 일정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6. 8. 31.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6. 9. 1.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26. 9. 8.) 상정

제2차 위원회(2026. 9. 14.) 인사청문회

제3차 위원회(2026. 9. 1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6. 8. 3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6. 9. 1. 동 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2026. 9. 3.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주철현, 곽상언, 김영호, 김한규, 박지혜, 부승찬, 채현일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김도읍, 김형동, 강민국, 윤용근, 주진우 위원
- 비교섭단체(1인): 최혁진 위원

○ 2026. 9. 8.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김도읍 위원(국민의힘)
- 간 사: 주철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위원(국민의힘)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2026. 8. 31. ~ 9. 17. (18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6. 8. 31. ~ 9. 7. (8일 간)

- 제1차 위원회(2026. 9. 8.)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위원회(2026. 9. 14.)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3차 위원회(2026. 9. 16.)

다. 회의경과

○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함.

○ 9월 8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 9월 14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위원장의 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의 선서 및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로 5분)을 실시함.

○ 9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심사경과보고서(안)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사일정	심사경과	장 소
1차	2026. 9. 8. 09: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4.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 ○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위원 -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제3회의장 (본관 245호)
2차	2026. 9. 14. 10:00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2.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 대법관(김성수) 선서 및 모두발언 ○ 대법관(김성수)에 대한 인사청문 -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 5분)	제3회의장 (본관 245호)
3차	2026. 9. 16. 09:30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2.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회의장 (본관 245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비 고
804	310	494	-	**804건**(위원회 의결)

※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인청법 제12조제2항)
- 인청특위 1차 회의(9. 8.)에서 위원회 의결로 9. 10.(목)까지로 제출기한을 정함.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기관명 수,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	감사원	7	-	-	7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	강남구청	10	6	1	3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3	강원랜드	1	1	-	-	
4	경찰청	45	1	26	18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 질의사항 부존재
5	고용노동부	6	6	-	-	
6	공무원연금공단	6	4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7	공직자윤리위원회	2	2	-	-	
8	관세청	17	1	1	1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비소관사항
9	교육부	37	17	11	9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교육기간 재직정보 미제공
10	국가인권위원회	2	1	-	1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1	국가정보원	10	–	10	–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이후 국정원과 경찰 간 대공·방첩 업무협조현황 등의 자료요구로 인사청문회와의 직접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음
1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	2	–	–	
13	국민건강보험공단	30	–	–	30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4	국민권익위원회	2	2	–	–	
15	국민연금공단	5(7)	–	–	7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6	국방부	10(11)	3	3	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7	국세청	76(87)	66	11	1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규정 - 비소관 사항, 구분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등
18	국토교통부	25(32)	32	–	–	
19	국회사무처	2	–	2	–	- 해당자료 부존재
20	금융감독원	26(32)	1	29	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해당자료 부존재
21	금융위원회	11(2)	2	–	–	
22	농림축산식품부	5	2	–	3	- 「농지법」에 따른 지방정부 보유사항
23	대검찰청	1	–	1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4	대법원	338(353)	353	–	–	
25	대통령비서실	4	1	2	1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공개법」 제9조
26	대한변호사협회	5	5	–	–	
27	대한적십자사	6	–	–	6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2	–	–	
29	법무부	25(24)	11	13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해당자료 부존재
30	병무청	12(15)	11	–	4	- 국방부로 부분이첩
31	보건복지부	1	1	–	–	
32	서울시교육청	5	1	4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3	서울특별시	2	2	–	–	
34	언론중재위원회	3	3	–	–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35	외교부	3(0)	-	-	-	
36	우리은행	1	-	1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7	인사혁신처	6(2)	2	-	-	
38	㈜크래프톤	4	4	-	-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	-	4	10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40	한국거래소	1	-	1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후보자 동의 증권계좌 없음
41	한국도로공사	7	7	-	-	
42	한국은행	6(8)	-	1	7	- 해당자료 부존재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3	한국장학재단	2	-	-	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4	한양대학교	3	1	2	-	- 해당자료 부존재
45	행정안전부	16	1	5	10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비소관사항
합 계		804 (834)	554	128	152	

※ ( )안의 숫자는 요구받은 기관에서 재분류하거나 이첩(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건수)된 자료의 건수로, 이를 토대로 제출·미제출 건수를 계산함.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서 504건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7인)	주철현	곽상언	김영호
	김한규	박지혜	부승찬
	채현일		
국민의힘(4인)	김형동	강민국	윤용근
	주진우		
비교섭단체(-)	-		

※ <부록> 대법관(김성수) 서면질의답변서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요지서 (10인)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6인)	주철현	곽상언	김영호
	김한규	박지혜	채현일
국민의힘(3인)	김형동	강민국	윤용근
비교섭단체(1인)	최혁진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법관 후보자임.

○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자 최종 심급기관인 대법원의 핵심적 구성원으로,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책무가 막중한 자리임.

○ 따라서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 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대법관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오늘 우리 특위의 중요한 임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성수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후보자의 모두발언 요지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림.

○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차대한 시기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법관 생활도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 보았음.

저는 1998년 감사하게도 법관으로 임용되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음. 저에게 맡겨진 사건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음.

○ 2006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국민이 바라는 법관상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음.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2011년에 처음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되어 법관 생활 28년 6개월 가운데 15년 이상을 고등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음.

○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음.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신임법관연수를 비롯하여 법관들에

대한 직무수행연수, 재판실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법관 개개인의 재판능력 제고와 전문성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음.

○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음.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의 '흠흠(欽欽)'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읊조림.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음. 아울러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음.

○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길 것이며, 앞으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기개 있게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 여러 덕목 중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함.
○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여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 의사를 법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처칠의 말대로라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나 독재에 비해서도 최악의 제도임에도 유지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법관의 독립, 담대함, 용기,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재판을 하고 싶음.
○ 후보자는 누구의 대법관이 되고 싶은지?	○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한 권한을 잠깐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역할에 충실할 것임.
○ 대법관으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법 앞의 평등이라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 권력도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을 임명한 권력에 불리한 결론이더라도 법관의 양심이 요구한다면 그대로 판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 약속하겠음.

○ 이홍구 대법관 후임인데, 퇴임식에 방문하였는지? 전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선명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오늘 후보자는 선명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문하지 못함. 퇴임사는 보았고, 전 대법관이라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이해함.
○ 구체적인 사건이 계류되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사건은 사건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람.
○ 사법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지?	○ 재판을 통하여 법률 해석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2) 대법원의 구성·기능 및 사법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① 대법원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	
○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것을 교과서에서나 헌법 수업시간에 들어본 적 있는지?	○ 과거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함.
○ 대법관 후보자 중 일부를 반려하고 선택적으로 재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는지? 선택적 재제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정부, 국회, 법원에 맡겨 분할을 하였다고 생각함.
○ 재제청 요구가 있다면 대법원이 선	○ 대법원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

택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을 재제청하거나 다시 추천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만일 기존에 있던 후보자 중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닌지?	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민에 대해 선거를 통해 직접 책임지는 국회 및 행정부와 달리,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러한 책임을 지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관련한 지금의 논의 자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말씀 명심하겠음.
○ 헌법 제104조제2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수십 년간 청와대와 법원이 사전에 논의를 하여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추린 뒤 제청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관행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 이러한 관행이 그저 관행이기 때문에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 삼권분립을 원하는 주권자 국민의 뜻이 헌법 제104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하여 제청 동의 및 임명을 해왔던 것으로 이해함.
○ 2028년부터 대법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음. 대법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된다면 개정 사항들을 잘 챙겨서 법관 제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알지 못하였음. 입법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음.

○ 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 대법관 인사 검증 및 제청을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람.	○ 그간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추천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임.
○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왔는데 최근의 단독제청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음. 향후 대법원장이 된다면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람.	○ 노력하겠음.
○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제청에 대하여 임명동의안을 보낼 의무가 있는 것임. 국회에서 동의를 한 뒤에 비로소 대통령의 권한이 생기는 것인데 대통령이 다른 대법관 후보에 대한 제청에 대하여는 국회로 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 삼권분립에 부합하는지? 재제청을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임.	○ 그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심사숙고하고 있음.
○ 손봉기 후보자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의해서 제청된 후보가 맞는지?	○ 그러함.
○ 대법원장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 사법행정의 영역으로 견제와 균형에 따라 그러한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

는지?	고 생각하기 어려움.
○ 제청된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현 정부에 맞는 대법관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중임. 그래서 답변이 곤란함.
○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임. 사법부 독립의 기로에 있다는 위기의식을 법원의 수장으로서 느껴야 함. 재제청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의 재진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한 의견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제청 때마다 다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후보자의 입장에서 해당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대법관을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지?	○ 「법원조직법」의 문언상 추천할 때마다로 되어 있음. 또한 대법관 추천 후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음.
○ 현행 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재판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원의 구성은 국민주권 민주공화정의 대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함. 미국은 연방대법원, 연방법원, 그리고 50개 중 38개 주에서 주권자가 임명에 관여하고 있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이 부합한지?	○ 현행 법관제도는 법조일원화 이후 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고 있음. 현재도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이 많이 있음.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비선출 권력에 맡긴 것은 다수의 의사로만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필요해서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함.
○ 제헌헌법을 보면 대법원장인 법관은	○ 모든 공무원은 주권자가 정한 권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시는 민주화가 덜 되었으나, 현재는 민주화가 잘 되어있는 상황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해주길 바라는 마음임.
<대법관 및 법관 구성 관련>	
○ 대법관 12명 중 11명이 서울법대 출신으로 특정학교 특정학과가 독식하고 있음. 대법원은 법전의 기술적 해석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임. 제도개선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람.	○ 다양성 확보는 대법원의 큰 가치이므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 대법관 정원이 증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치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현행 14명 대법관 체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지?	○ 이미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임.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국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을 것이라 생각함.
○ 사법신뢰의 위기 관련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깊고,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 특히 대법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증가하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사법부 신뢰 위기의 중요한 원인	○ 재판의 지연이 사법부 신뢰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대법관의 증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 주된 취지임.

이 되고 있는데, 대법관 증원이 재판의 지연을 막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보는지?	
○ 대법관 대부분이 50~60대로 특정 연령에 편중되어 있는데 시대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도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법원조직법」 하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연령대의 훌륭한 법관들을 모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점도 고민해주셨으면 함.	○ 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 독일의 대법관 수가 100명이 넘는 것은 여러 특수 연방법원을 두고 있기 때문임.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독일과 단순 비교가 어려움.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함.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함.
○ 매년 대법원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5만 건이 넘으며 이는 대법관 수를 조금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판단은 사실심에 맡기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불필요한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가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임.	○ 상고심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유념하겠음.

② 사법정책·제도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돈이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못받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 특히 국선변호제도는 낮은 사건 수임료, 국선변호료 체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음.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이것이 협조 거부가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의견은?	○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하급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함.
<법왜곡죄 신설 관련>	
○ 법왜곡죄가 신설되었는데, 하급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경우 피고인은 하급심 판사와 상급심 판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판사들이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 형식논리적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임. 이미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편이며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하지만 이미 입법화되었고 실무운영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따져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법왜곡죄를 판단하는 경찰이 대법원 상위에 있는 사법 판단 기관으로 군	○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예산은 제도 초기에 판사들이 심리

림할 가능성은 없는지? 법원행정처가 이미 매뉴얼도 준비하고 변호인단도 만들었는데 이러한 예산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왜곡죄의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람.	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아직은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을 내기는 어려움.
○ 전체 법관 중 16%에 해당하는 법관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하고 있고 대법원은 판사들의 조력을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음. 법왜곡죄가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키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법관들이 고발된 상황이고 법관들이 그로 인해 위축될 수 있지만, 법왜곡죄 자체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지 않음. 대법관이 된 이후에도 법왜곡죄에 대해 유념하여 살펴볼 것임.
<심리불속행 관련>	
○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답변하기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과제임.
○ 간이이유 기재 의무화 등 적어도 핵심쟁점 판단 요지 등은 작성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에 대한 생각은?	○ 현재 적체된 사건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심리불속행이나 간이이유 기재 의무화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실 수 있는지?	○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림.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향후 법관들이 직권에 따른 증거채택, 심문을 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데 추가적인 재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앞으로 재판 업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예규 개정,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 전에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음.
○ 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영장제도가 한번 크게 바뀐 적이 있는데, 당시 법원과 검찰의 숙의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음. 그런데 최근 짧은 기간 내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었고, 법원과 헌재가 오랫동안 논의해 오던 재판소원이 전격 도입되었으며, 해방 이후 존재하던 검찰청이 폐지되었고, 법왜곡죄가 도입되었음.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보는지?	○ 입법 취지는 그렇다고 알고 있음. 다만 우려는 있었던 것으로 앎.
○ 민주당도 위 개정 이후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기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임. 범죄 대응 능력은 지속적으로	○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과 국민들의 불신이 배경이 되어 입법까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이제 와서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함.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어놓고 사후약방문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 조작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지? 심급을 달리하면서 각급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임.	○ 판단할 수 있음. 명심하겠음.

③ 수사·재판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폭력행위 없이 기록을 위하여 촬영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였는지 의아한 측면이 있음.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제기되어 전원재판부에 사건이 회부되는 등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였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존중할 것임.
○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항소심 주심 판사였는데,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 법관은 사건을 배당받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 개인적으로는 해당 사건만 집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선배 법관들로부터 배워왔기

	에 그렇게 하였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받은 사건이라 생각함.
○ 2021년 트럼프의 대선 불복 사건의 관계자들은 중형에 처해졌음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에 대한 의견?	○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하였음.
○ 검찰의 수사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검사가 직접 공소 취소를 한 사례를 본 적 있는지?	○ 1심에서 형사 재판을 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고,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관련>	
○ 헌법 제84조 소추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은 무엇인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 현재 상태는 기일추정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추정 상태임. 그 사유를 밝힌 재판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재판부도 있음.
○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 올해 7월 판례에 따르면 소추는 사전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는 기소를 의미함. 대통령 재판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 결정함.
○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모두 정지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형사소송법」 제306조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인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인지?	○ 공소가 제기된 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음.

○ 소추와 재판은 사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 개념 자체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소추가 되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 그런 규정은 없음.
○ 재판 중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바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며, 담당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란, 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함.
○ 하급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중단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인지?	○ 해당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으며, 당연히 재판이 중단된다고 없어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재판은 지연되거나 정지되고 있는지?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공소의 제기만	○ 헌법 제84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음. 개별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음.

을 의미할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재판을 당장 재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기소와 소추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소추는 공소제기와 재판 수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헌법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해당 재판부의 견해를 존중함.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	
○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때, 6·3·3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는지?	○ 모든 법관이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는 측면도 있음.
○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재판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일 만에 결정하는 것이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근무 경력이 없고 당시 재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여 적절했는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려움.
○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과 달리, 대선 후보 재판은 9일 만에 종료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지?	○ 그런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리라 생각함.
○ 법리적으로, 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뀐 상황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재판 재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재개하려고 할 때, 대법원이 이를 사전에 막	○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현재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재판을 중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을 수 있는지? 1심 판단에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1심 재판의 재판장이 판단했으면, 다음 재판장이 와서 다른 법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 변경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러한 재판부의 결정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 그 유죄 취지에 대략적으로 기속되는 것이 맞는지?	○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음.
○ 후보자가 2심 재판장을 맡은 당시에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을 다 유죄 취지로 결론 내렸던 것 아닌지?	○ 파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법리적인 부분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증거 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환경 재판 관련>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하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에 관한 판결을 하고 싶다고 답변함. 그러나 이 답변을 보면 환경소송을 많이 맡을 기회가 없다고 보이는데 맞는지?	○ 실제로 환경 소송을 맡아본 적은 거의 없어서 공부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함.
○ 환경소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활성화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환경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그곳에 배속된 적이 없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음.

○ 환경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판결을 해왔고,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일반 주민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소송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또한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직권심리와 관련하여 지금은 대부분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환경소송 관련한 부분은 향후 다 연계하여 살펴보겠음.

④ 기타 사법부 관련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내 공공기관 사법신뢰도 평가, 한국갤럽 기관 신뢰도 조사 등을 보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특히 법원 내부에서 현재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신이 78%인 것으로 나옴. 국민 및 법원 내부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기본적으로는 재판 업무를 열심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200일 이상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체제의 필연적 결과가 사법부 신뢰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프랑스의 독립적인 합의제 제도(그 예로 사법평의회)의 한국에의 적용에 동의하	○ 재판의 지연이 신뢰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프랑스의 사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함.

는가?	
○ 현 정부의 사법개혁 3법도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 법원이 역할을 했다면 법률 개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 사법개혁 3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입법 취지는 존중함. 다만 법관들이 위축되거나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 사항들이 실제 법 집행 내지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사법부를 정치 권력 아래에 두는 것이 사법개혁이 맞는지?	○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함.
○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고발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지, 판사 개인에게 가는지?	○ 궁극적으로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
○ 검찰의 조작기소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충분히 이를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있을 때 적극적이고 정의로우며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유념하겠음.
○ 대법원이 꼭 서초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지방이전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수도권에 있는 만큼 사법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재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1조 4천억원의 증액	○ 개인적으로 이전하면 가서 열심히 일하겠음.

예산 중 1조원 이상이 서초동 땅값임. 또한 2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법관의 관사로 활용되고 있음. 대법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민의 곁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인지?	
○ 계엄 당일 대법원장이 비상 간부 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법원의 이러한 대응이 헌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보는지?	○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새벽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 대법관 후보자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특히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후보자의 자리가 질의하는 의원들의 자리보다 낮아 올려다봐야 하는 구조임. 법원의 법정도 판사가 검사, 변호사 및 사건의 당사자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권위적인 구조임. 이러한 법정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림.	○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주로 하고 이렇게 답을 하는 상황은 익숙하지 않음.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행정과 재판을 하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권, 소추의	○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생각함.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지귀연 판사를 방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미루는 판사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지?	○ 대법원은 일선 재판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미루는 법관들에 대해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아닌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시킨 그 재판을 1년 4개월 가까이 방치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임.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지?	○ 사법행정의 최고를 맡고 있는 대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도저히 아닌 것 같으며, ○ 저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전혀 대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음
○ 헌법 제104조에따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보낼 의무가 있음. 왜냐면 국회동의 여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청이 있으면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 재제청을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임.	○ 대법원장께서 그 부분을 숙고하고 계신 걸로 앎
○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이 올바른 표현이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 삼권분립의 취지로 사법부 독립이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용어 사용을 명확하게 해주길 바라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지?	
○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의 직에 있었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라”는 가인 선생의 말씀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함.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가인 대법원장 간 충돌이 있었을 때 국가원수에 맞서 대법원을 지키는 한 마디였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지?	○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함.
○ 당시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는지? 현재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 그 당시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듦.
○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감사원에 지적되었음에도 예산 증액을 신청하였으며, 전관의 고액 수임료 문제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시 제한 없는 사건 수임 등이 사법불신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당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고, 감사원의 지적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상당 부분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전관예우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전관 출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관 선임은 왜 수임료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법원 내부에서 전관 출신들이 특별히 유리할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	○ 대법관이 되고 난 후 퇴직하면 학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음. 서울고법에서 전관예우 근절대책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음. 법관 출신이 수임료가 높은 이유는 법정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경북에는 지방법원 본원이 없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경북에도 법원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은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려서는 안 되고 하급심 법원을 강화하는 등 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 명심하겠음.

(3)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현직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법부 독립 침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 원칙적으로 그러함.
○ 후보자는 배임죄 처벌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대통령 한 사람을 전제로 한 배임죄 폐지 논의는 형사사법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배임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음. 특정 개인을 전제로 한 배임죄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함.
○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회사들의 불법적 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지?	○ 그렇지 않을 것 같음.
○ 2026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볼 때, 2,150명 정도의 입학생 중 서울권 학생들이 1,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옴. 지방 학생에 대한 유리천장 문제 등에 비추어 예비 변호사 시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관련 통계가 그렇게까지 편중되어 있는지 몰랐고, 그러한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이제 약 15년이 되어가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며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 12·3 계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사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12·3 비상계엄은 불법임. 그러니 수많은 시민들이 나온 것임. 검찰청 폐지도 검사들이 자초한 일임. 그럼에도 대법원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지 않았는데 필요할 때는 메시지를 명확히 낼 필요가 있음.	○ 12월 3일 이후 재판을 이유로 조금은 머뭇거렸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한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폄훼한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미 법률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봄.
○ 향후 대법관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맡는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람.	○ 유념하겠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 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브로커,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등 그러한 상황에서 영전전담판사가 제약회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후, 그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 채용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윤리감사관 근무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는지?	○ 예전에도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모든 법관에게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유념하라고 의견을 내고 교육하여 왔음.

○ 쥐 실험 결과 사람에게도 쓸 수 없는 약임에도 식약처에서 걸러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수많은 피해자나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반 국민들이 영장 기각에 대해 승복할 수 있겠는지?	○ 위원님 지적에 수긍할 수 있으나, 현재 윤리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
○ 후보자가 윤리심사관일 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인지?	○ 위원님이 가정하신 상황이 모두 사실이라면 엄중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등 금액이 총 5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았음. 재산 증식 등에 둔감하고 청렴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이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함.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 처남과 함께 살게 된 배경은?	○ 2021년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고,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상황에서 장모님, 배우자 및 처남이

	상의하여 같이 살게 되었음.
○ 처남과 함께 살며 보증금, 월세, 관리비 및 식비를 다 부담했음에도 2023년 말부터 월세 지급이 늦어지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 그러함.
○ 증여세 논란 관련하여 사실관계, 즉시 납부 계획 등이 있다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당시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분담하기로 했었으나,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공에 따른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법조인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함.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에 신고하였음.
○ 법관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은 없는지? 소득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고 소득을 지출로 다 쓰는 구조인데 재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 법관 수입이 주된 수입원임. 소득의 증가는 가액증가가 그 원인중의 하나임.
○ 후보자의 자산 문제와 관련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출처 불명의 소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 자녀들의 주식투자가 성과가 있고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성과와 부모 소유 토지의 가액 상승 등이 문제된 5억 5천만원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후보자의 의견은?	○ 의원님의 설명이 맞음. 불법적인 소득은 없음.

○ 배우자가 모 백화점 VIP 회원인지? 올해에도 VIP 회원인지? 금액 기준이 따로 없는지?	○ 그러함. 올해 기준 연간 구매금액 2,000만원이 기준임.
○ 강남 아파트가 없었다는 것은 존경스러우나, 아파트 없이도 십수 년간 강남에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도 문제임.	
○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실버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있음.	○ 송구스럽게 생각함.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음. 그렇지만 여러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 오늘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대법관에게 부여된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도 깊이 깨닫게 되었음.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준비과정에서 제 스스로 다짐한 사항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음.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음.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우리 위원회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중요함을 고려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음.

○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하였음. 이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임.

○ 김성수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람.

5. 종합의견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에 대하여 ① 임명동의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④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을 토대로,

첫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4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둘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

셋째,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에 대해,

넷째,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검증함.

○ 이와 같이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됨

○ 먼저, 일부 청문위원은

- 후보자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3월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풍부한 재판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재산이 비교적 적은 청빈한 법관이라는 점,

- 대법관의 역할에 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고 이를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

-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헌법기관 상호 간에 존중과 협의를 바탕으로 인사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

-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단기간에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판의 당부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판단 영역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

-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와 재판의 계속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

의 해석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일방적인 입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헌법적 가치와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답변하는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및 사법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일부 답변이 모호하고 분명치 아니하여 대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는 점,

- 후보자의 처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장기간 거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인지, 그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 납부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점,

-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관계, 특히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는 점,

- 대법원장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단기간에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그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해당 판결의 내용 및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하여 명확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 및 진행 중인 재판의 계속 여부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국민적 관심

이 높은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기준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

-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사안과 관련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대법관으로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소신이 불분명하다는 점,
- 대법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 판단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첨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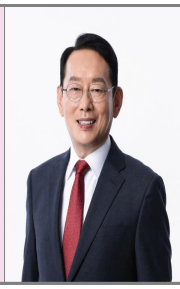
<참고자료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대법관(김성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대법관(김성수)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국민의힘			
			**김 도 읍** (64년생, 부산 강서구) · 4선(19 · 20 · 21 · 22대)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 **(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회관 452호 784-1740 6788-6136 F)6788-6140

2026. 9. 3. 현재

더불어민주당 (7)	간 사		**주 철 현** (59년생, 전남 여수시갑) · 재선(21 · 22대)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 ·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회관 536호 784-6341 6788-7311 F)6788-7315
			**곽 상 언** (71년생, 서울 종로구) · 초선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 대학원 법학과 졸업 · (전)예결특위 · 산자위원회 위원 · (전)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 (전)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 · **(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성평등가족 위원**	회관 327호 784-2890 6788-7436 F)6788-7440
			**김 영 호** (67년생, 서울 서대문구을) · 3선(20 · 21 · 22대) · 북경대학교 졸업(국제학 학사) · (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 (현)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대표의원 ·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회관 404호 784-4020 6788-6261 F)6788-6265
			**김 한 규** (74년생, 제주 제주시을) · 재선(21 · 22대)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버드 로스쿨 석사 · (전)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731호 784-5621 6788-6771 F)6788-6775
			**박 지 혜** (78년생,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 **(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성평등가족 위원**	회관 735호 784-3174 6788-6981 F)6788-6985
			**부 승 찬** (70년생, 경기 용인시병) · 초선 ·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 졸업 · (전)국방부 대변인 · (전)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726호 784-9130 6788-6741 F)6788-6745
국민의힘 (5)	간 사		**김 형 동** (75년생,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21 · 22대)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전)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 (현)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 **(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관 1016호 784-6513 6788-6356 F)788-6360
			**강 민 국** (71년생, 경남 진주시을) ·재선(21 · 22대) ·(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수석대변인 ·**(현)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회관 1007호 784-0797 6788-6016 F)788-6020
			**윤 용 근** (69년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초선 · 충남대 사법학과 ·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 (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미디어대변인 · (전)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 (현)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 **(현)국회 문화체육관광 · 운영위 · 예결위 위원**	회관 1003호 784-2704 6788-6861 F)6788-6865
			**주 진 우** (75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전)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현)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저지특위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39호 784-9423 6788-7271 F)6788-7275
비교섭 (1)			**최 혁 진** (70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전)자연드림 씨앗재단 상임이사 · (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 **(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회관 317호 784-9241 6788-6096 F)6788-6100
			**채 현 일** (70년생,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전)영등포구청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관 836호 784-1307 6788-7111 F)6788-7115

참고자료 2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6. 9.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대법관(김성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안　　건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6. 9. 14.(월) 10:00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국가 안전보장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보고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각각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6. 9. 8.(화) 09: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4.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2차> 26. 9. 14.(월) 10:00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3차> 26. 9. 16.(수) 09:30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 의사일정, 회의일시, 장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6. 9. 14.(월)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6년 9 월 9 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도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6. 9.

대법관후보자김성수

- 목 차 -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 3

1.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3

2. 대법관 제청을 수락한 이유는? ····· 5

3. 현재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 3가지를 뽑는다면?

····· 6

4. 후보자의 판결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3가지는? ····· 7

5.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 9

6.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했다고 평가하는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 10

7.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1

8.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2

9.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3

10.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4

11.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5

12.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6

13.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7

14.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8

15.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향후 사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 19

16.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원의 영장심사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압수수색 영장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20

17.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될 경우 기관 간 사건 이송이나 수사·기소 판단의 불일치 등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21

18.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의사와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함. 현행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 22

19.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임에도 재판부나 지역 등에 따라 양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양형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행 양형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24

20.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 25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개변론을 확대하고 공개변론을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7

22. 재판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28

23.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대법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과 상고허가제·상고법원 등 그동안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9

24.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며,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31

25. 다양한 법률실무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3

26.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판결문 공개 확대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4

27.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서비스와 재판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재판 및 사법행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35

28.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해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재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36

29. 특정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해당 판결과 유·무죄 또는 양형 판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피고인의 사건까지 담당할 경우 예단이나 공판중심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 37

30.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 적용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현행법상 사법적 제재수단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38

3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대화 당사자의 녹음 자유와 상대방의 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39

32. 제3자뇌물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지역사회 기여나 공공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개발이익의 공익 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1

33.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법행정과 예산 집행 등 재판 외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42

34.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법관의 오판이나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관 징계 및 윤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43

35.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최종심인 동시에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률의 문언과 기존 판례를 존중하는 사법적 안정성, 변화된 사회현실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어떠한 원칙과 자세로 판단할 것인지? 또한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고 싶은 우리 사법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 44

《곽상언 위원 서면질의》 ····· 49

1.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49

2. 법왜곡죄 시행이 재판 독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1

3. 재판을 담당한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법행정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2

4.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3

5.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법원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4

6.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5

7.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6

8.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57

《김영호 위원 서면질의》 ····· 61

1.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좌우명이나 모토는? ····· 61

2. 법관으로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과 그 이유 ····· 62

3.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 63

4. 최근 들어 가장 흥미롭게 읽은 책과 그 이유 ····· 64

5. 법관 업무와 별도로 법원 안팎에서 학술연구단체나 시민단체, 동아리 등 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험, 또는 현재 소속되어 활동중인 단체나 그룹이 있습니까? 어떤 성격의 어떤 단체인가? ····· 65

6.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균형감각을 기르거나 일반 국민들의 사법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 66

7.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시선

이나 비판으로부터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은? ····· 67

8.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이익과 충돌할 때, 법관으로서 판단의 우선순위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해 왔나, 구체적인 사례는? ····· 68

9. 처남 소유 아파트 전대차 계약 관련 해명 및 자료 ····· 70

10.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증여서 탈루 의혹을 제기되자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 71

11.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의미인가? ····· 72

12. 전셋집을 재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은 흔치 않은데,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 경위는? ····· 73

13. 후보자께서는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처남 가족까지 모두 함께 동거하고 있나? 이 또한 흔치 않은 일인데, 처남과 함께 살게 된 경위는? ····· 75

14. 월세는 실제 지급했는지?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망) ····· 76

15. 2006년부터 4년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담당관으로, 윤리감사심의관으로 사법행정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나? ····· 77

16. 법관연수제도 개편 : 개편 취지와 내용, 성과 ····· 78

17.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 80

18. 교육에 활용한 교재와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었는지? *강의안 첨부, 관련 교재 목록 첨부 요망 ····· 81

19. 국제협력업무 확대 :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 82

20. 각종 실무서 발간 : 어떤 실무서들이었는지 관련 목록 ····· 85

21.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과 관련, 해당 변호사회가 밝힌 우수법관 선정 사유는? ····· 86

22.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현행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은 무엇이며,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 87

23.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사도 7개월 지연되면서 사법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견해. ····· 88

24.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 89

25. 지난 해 5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단시일 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사건에 대한 평가. ····· 91

26. 현 정부들어 추진된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견해 ····· 92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 ····· 97

1.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당사자인 민·형사, 행정 소송 관련 현황 및 결과, 결정문, 판결문 일체 ····· 97

2. 후보자가 법관시절 선고한 판결 목록 및 판결문 일체 ····· 98

3. 후보자가 선고한 판결문 공개 여부(공개/비공개로 구분) ····· 99

4. 후보자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내역 일체, 부부 증여 내역 ····· 100

5. 후보자의 학술지 게재 원고 리스트(일자, 학술지명, 학술지급, 공동저자, 원문파일) ····· 101

6. 후보자의 (내부/외부) 연구비 지원 내역 및 연구용역 참여 현황 일체 (일자, 공동연구자, 연구자별 연구비 지원 내역, 연구용역결과물 등) ····· 102

7. 후보자의 기고문, 사설, 칼럼 등 각종 언론 기고문 일체 ····· 103

8.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중 어떤 권한이 우선하는지? ····· 104

9.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원리로부터 유래하는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견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05

10. 대법관 제청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06

11. 사법부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07

12.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법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 3가지 ····· 108

13.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09

14.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공공기관 등이 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10

15. 처남 소유 도곡렉슬 아파트를 거주하면서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세 8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 ····· 111

16. 후보자가 법관 시절 판결한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의 요지 ····· 112

17.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13

18. 감사원에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에 대해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또한 대법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격려금을 수령할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14

19. 재판 과정의 속기-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115

《박지혜 위원 서면질의》 ····· 119

1.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19

2. 대법관 소임이 무엇이며, 후보자는 그에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20

3.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직무에 임할 계획이십니까? 122

4.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23

5.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24

6. 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25

7.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126

8.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대법관 수가 적어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27

9.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요청사유서는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재판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 128

10.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는 때로 긴장 관계에 놓입니다. 두 가치가 충돌할 때 후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 130

11.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수청·공수청·국가수사본부 등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131

12.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132

13. 경력법관 선발이 여전히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돼 법원이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자를 선호하고, 그 결과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실무사회 경험을 쌓기보다 시험 준비에 몰두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사회 경험과 여러 법조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133

14. 최근 연론 조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134

15. 현재 대법원 구성이 출신 대학과 직역, 성별, 지역 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35

16.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확충 논의가 지리적 제약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법률로 고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136

17.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관련 결정에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소재지의 변경은 헌법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137

18.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사법접근성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38

19.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헌법 규정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139

20.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389 등)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영역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인데, 이 결정이 앞으로 대법원의 환경·에너지 관련 재판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140

21.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오랫동안 좁게 인정되어 왔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인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고 확산적인 사안에는 이러한 지역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41

22.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으로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분쟁에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142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43

24.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 법리의 규범적 의미는 무엇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45

25. 장남 주식 보유 내역 관련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장남의 보유 주식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가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3월 관보에 게재된 장남 주식 보유 목록에는 해당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두 종목을 신규 매입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해당 매입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남의 주식 보유 가액이 2025년에 약 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가분의 자금 출처는 무엇입니까? ····· 146

26. 처남과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 등 관련 2011년 역삼동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처남이었는데, 당시 처남과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설정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후 2021년 최초 도곡렉슬 아파트(410동 404호)로 이사하셨을 당시에는 어떤 계약

형태로 거주하셨습니까? 또한, 2023년 도곡렉슬 410동 904호로 이사하실 당시,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에 대해 7억 5,000만 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때 기존 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씩 처남에게 지급하신 것이 맞습니까? ····· 148

27. 채무 관련 현재 신한은행 금융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사인 간 채무 또한 1억 5,000만 원이 존재합니다. 반면, 앞서 언급된 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목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151

《부승찬 위원 서면질의》 ····· 155

1.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공소취소 제도가 부당한 공소권 행사를 시정하고 피고인을 불필요한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하는 권리구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법원 역시 이른바 '유우성 사건'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위조·변조, 허위진술 강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핵심증거의 의도적 은폐 등 공소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공소를 계속 유지해 최종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법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155

2.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단순한 수사과정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회유·압박 의혹만으로 공소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증거 위·변조, 허위진술 강요, 핵심증거 은폐 등 기존 공소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의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대상이 기존 수사기관일 경우 동일 조직이 과거 수사의 위법성과 공소유지 필요성까지 다시 판단하는 데 이해충돌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157

3.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취하할 경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공소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특별검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사·소추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이 특별검사에게 공소유지·공소취소 또는 상소취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 158

4. 자기재판 금지 또는 편견 배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유·무죄와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임. 특별검사는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기관이 아니라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인데,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자기재판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159

5. 학계에서는 공소취소가 위법·부당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권리구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평가함. 수사기관 스스로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해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 160

6.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만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혼재됐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며, 특별검사의 추천·임명방식은

수사대상과 추천주체의 관계,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장치 등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결정한 바 있음. 특별검사가 본질적으로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법률이 특별검사에게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이나 헌법에 반한다고 보는지? ····· 161

7. 현재 대법원은 방대한 상고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인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부담하고 있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음. 현행 대법관 정원만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현 체제에 한계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162

8.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실제 발의한 바 있고, 2026년에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공포됐음. 정치적 제안 주체와 별개로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164

9.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대법원 역시 과거 상고심 제도개편과 결합한 제한적 대법관 증원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음. 대법관 정원과 법원의 조직이 「법원조직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입법으로 논의·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 165

10.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12명을 일시에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전원합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급심

법관 인력 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연구관 확충, 하급심 인력 보강, 사건배당 및 소부 운영 개선 등 어떠한 보완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지? ····· 166

11. 헌법은 대법원의 구성과 대법관 임명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관의 구체적인 정원은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음. 상고사건의 증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해 국회가 법률로 대법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영역임에 동의하는지? ····· 168

12. 법왜곡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계기로 기존 직권남용죄만으로 법관·검사 등의 고의적인 법률·증거 왜곡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돼 왔음. 사법부 독립은 개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지, 법관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법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69

13. 현행 법왜곡죄는 단순한 오판이나 법률해석의 차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과 고의적인 법령의 왜곡 적용, 증거의 인멸·위조·변조 등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제로 할 때 법왜곡죄를 단순히 '판결을 잘못하면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171

14. 독일 형법도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적 오류나 오판이 아니라 객관적·주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왜곡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판시해왔음. 현재 시행 중인 법왜곡죄 역시, 입법과정에서 구성요건상 목적과 고의,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법관의 재판독립과 법관·검사의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 172

15.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은 모든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확정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절차도 두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일반적인 '제4심'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173

16. 현행 재판소원의 법률상 청구요건을 보면 단순히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 또는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함.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와 엄격한 청구요건을 운용할 경우 이른바 남소나 '4심화' 우려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 174

17. 독일의 재판소원 역시 일반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다시 판단하는 상급심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심사하는 헌법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역시 상소심에 대한 또 하나의 상급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확정재판의 헌법적 한계를 심사하는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175

18.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법체계, 법적 안정성, 기본권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성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임에 동의하는지? 176

19. 행정처분이나 입법 등 다른 국가권력 행사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헌법적 통제를 받는 반면, 국민의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확정재판은 종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음.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별도 구제수단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구제를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 177

20.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음. 개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필요하다면 법원행정처 개편,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법관대표기구의 권한 강화 등 어떠한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178

21. 개별 재판의 심리와 판단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지만 법관 인사, 법원 예산, 조직 운영 등 사법행정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정적 성격도 갖고 있음. 후보자는 재판작용과 사법행정작용을 구별해 후자의 경우 재판내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회와 국민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 179

22.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최종 임명제청자를 결정하는 권한도 대법원장에게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추천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영향력을 일정 부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180

23. 대법관은 단순한 법원 내부의 승진 보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질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기관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법관대표기구, 변호사업계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성별·지역·법조경력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은 무엇인지? · 181

24. 현행 법관 인사는 법원 내부의 근무평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변호사회는 실제 재판과정을 경험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관의 법정 태도, 절차 진행의 공정성, 재판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평가기준의 표준화, 사건 결과에 따른 보복성 평가 방지, 이의절차 마련 등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외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자료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 182

25. 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규정하는 반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별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행위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도 일정 범위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 184

26. 헌법재판소는 2025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법관은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결합된 별도의 헌법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임. 후보자는 양 제도의 헌법상 문언과 절차구조의 차이가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달리 평가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 185

27.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권'이 별도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협의 또는 재검토 요구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186

28. 법률상 사전합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여러 헌법기관의 권한이 연속적으로 행사되는 절차인 만큼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187

29. 사법부 독립은 개별 재판의 심리와 판단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원칙임. 그러나 대법관 후보 제청절차, 사법행정, 법관윤리·감찰 등은 개별 사건의 재판내용과는 구별되는 영역이라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 출석·설명 요구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개별 재판내용에 관한 답변과 사법행정에 관한 설명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 188

30.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대법원장의 제청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는 절차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과 국회의 동의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 189

31. 우리 법제에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협의 관행이 이어져 왔음. 이러한 사전협의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불필요한 갈등과 이견, 우리 법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법관을 조속히 임명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관행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 190

32.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기능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책무와도 관련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공석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법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191

33. 12.3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침묵하였음.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했다고 보는지?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 ····· 192

34.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대법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 등을 종합할 때, 대법원장이 자신의 헌법상・법률상 책무를 방기하거나 유기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93

35.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에 대하여 얼마 전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했음.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94

36.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해당 사건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총리와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 건 아닌지? ····· 195

37.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그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특정 사건과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96

38.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적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97

39.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자 헌법 제103조의 법관독립을 이유로 심리·판결의 성립 및 선고 경위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사법부가 국민에게 재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198

40.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폐쇄적인 운영이나 불투명성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99

41.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해왔음.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7개월간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특정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정작 대법원 구성과 재판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공석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신속한 재판 원칙에 대한 일관된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200

42. 12.3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되었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명하며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는 사법부의 의견 개진을 넘어 입법 과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아닌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

43.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바 있음.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임. 이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입법부의 정당한 감시와 검증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202

44. 국민의 법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4년부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후보자는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행정과 재판 운영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203

45.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법원 내부 설문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는지? ····· 204

4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지연, 법관의 개인적 비위 등 여러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대법원이 해당 법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법관의 직무수행과 품위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대법원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205

47.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액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자체감찰에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대법원 자체감찰의 판단과 외부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사실이 있음. 이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대법원 자체감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206

48. 근무시간 음주·금품수수 등 사법부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며, 사법부 스스로 비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관은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법부 내부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은? ····· 207

《채현일 위원 서면질의》 ····· 211

1.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중점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법적 가치는 무엇이며, 향후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법정책 및 제도는 무엇인지 ····· 211

2. 법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12

3.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세 가지는 무엇이며, 각각

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법적 가치는 무엇인지 ····· 213

4.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건은 무엇이며, 해당 사건을 통해 법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 215

5. 후보자가 임기 6년의 대법관직을 마쳤을 때 국민과 법조계로부터 어떠한 대법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216

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17

7.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와 판단 과정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결문의 가독성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218

8.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하여 국민이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 220

9.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판례 검색, 사건 분류, 재판지원 등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적 판단과 재판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무엇인지 ····· 221

10.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견해 ····· 222

11. 민사·형사·행정사건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24

12. 대법관 증원과 함께 재판부 운영방식과 사건배당·심리방식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 225

13. 동종·유사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형사사건의 양형이나 민사·행정사건의 판단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이른바 '재판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26

14. 개헌 필요성과 사법 분야의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후보자 견해가 무엇인지 ····· 227

15.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228

16.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29

17.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례 변경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 230

18.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반대의견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며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대법관이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 ····· 231

19.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헌법 및 법률 해석이나 권한 범위를 둘러싼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양 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 정립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32

20. 현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신뢰 저하의 주된 원인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233

21.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견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헌법상 양 권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지 ····· 234

2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대법원장이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지 ····· 235

23. 특정 정치권력 또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보은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직무수행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36

24. 과거 법원 윤리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관 징계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 237

25. 법관에 대한 징계 수준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38

26. 법관의 비위에 대한 사법부 내부 감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와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39

27. 법원의 조직문화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인사구조가 특정 엘리트 법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240

28. 퇴직 대법관 및 고위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의 수임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41

29.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 형사공탁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242

30. 형사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44

31. 사법행정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하는 현행 구조가 재판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 245

32. 노동·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동법원·환경법원 등 전문법원을 확대·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246

33. 사형제 등 중대범죄에 대한 형벌제도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국민의 법감정·범죄예방·인간의 존엄 및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어떠한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지 ····· 247

《김형동 위원 서면질의》 ····· 251

1.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51

2. 다변화되는 노사관계 및 고용 형태의 변화, 노란봉투법 개정 등에 따라 노동분쟁이 고도화·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응하여 노동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52

《강민국 위원 서면질의》 ····· 255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견해는? ····· 255

2.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관련 재판 실무 원칙과 구체적 사례는? ····· 256

3. 국민참여재판 확대, 상고심 개편 등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258

4. 재판에 AI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주요 우려사항은? ··· 260

5.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 심리 시 지킬 원칙과 기준은? ····· 261

6.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본인은 진보 성향의 판사인지, 보수 성향의 판사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 262

7. 법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 263

8.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그 이유는? ····· 264

9. 존경하는 법조인이나 본받고 싶은 판결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 265

10. 퇴임 후를 포함해 법조인으로서 앞으로의 개인적 목표는? ····· 266

11.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재판에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67

12.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 조치를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로 보는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는지? ····· 268

1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면 제청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을 감행한 배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269

14. 대법원 후보자 제청 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필수 요건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70

15.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의 대폭 증원이 재판 지연 해소라는 순기능보다 사법부의 정치화 및 코드 인사 양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 여부는? ····· 271

16. '법왜곡죄' 신설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소신 있는 판단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72

17.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73

18. 소위 '사법개혁 3법'이 특정 정치세력·사건 당사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274

19.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75

20.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인권 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에 실제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 276

21.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277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 적용한 것이라고 보는지? ····· 278

23.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 동안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 '국민의 재판관'으로 남을 것인지? · 279

《윤용근 위원 서면질의》 ····· 283

1. 각 근무 법원·재판부별 담당사건 및 주요 판결 목록 (전체 재직기간 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결과 포함) ····· 283

2. 광주지법 및 해남·장흥지원 근무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284

3.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285

4.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부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286

5. 제주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287

6.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288

7.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 사법행정업무 (해당기간, 업무분장표 포함) ····· 289

8.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290

9.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 당시 담당업무 및 교육·연수자료 (해당기간, 강의·교육자료 목록 포함) ····· 291

10. 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사건 전체 목록 (해당기간, 사건번호·죄명·선고결과) ····· 292

11. 법원 내 학술모임·연구단체 가입·활동 내역 (전체 재직기간, 단체명·가입기간·직책·활동내용) ····· 293

12. 윤리감사제1담당관·윤리감사심의관 재직기간 및 업무분장표 (해당기간, 전체 업무분장표) ····· 294

13. 후보자가 직접 조사·검토·보고·결재한 법관·법원공무원 비위사건 전체(해당기간, 사건명·대상자·지위·비위내용·기간·결과) ····· 295

14. 징계불청구·감찰종결·주의·경고로 종료된 사건(종료사유 포함) (해당기간) ··· 296

15.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비위사건 및 미통보 사유 (해당기간, 사건별 사유) ····· 297

16. 법원장·고법부장 등 고위법관 관련 감찰사건 (해당기간, 조사·처리결과) 298

17. 감찰대상자와 후보자가 과거 동일 법원·재판부에서 근무한 사건(해당기간, 이해관계 및 처리방법) ····· 299

18. 상급자로부터 조사범위·사건종결·징계수위 관련 지시·의견을 받은 사실(해당기

간, 지시자·내용·처리결과) ····· 300

19. 법원행정처장·차장·대법원장 등에게 보고한 감찰 관련 문건 (해당기간, 문건목록 및 제출 가능한 원문) ····· 301

20. 후보자 작성·검토·결재 보고서·검토보고서·의견서·회의자료 (해당기간, 목록 및 원문) ····· 302

21. 재산·외부강의·친족관계·금품수수·전관관계 사건을 조사한 사례(해당기간, 적용 윤리기준 포함) ····· 303

22. 과거 감찰사건에 적용한 윤리기준과 현재 후보자 본인에 적용하는 기준의 동일 여부(현재, 서면답변) ····· 304

23. 후보자 전체 재직기간 중 주요사건 목록(전체 재직기간, 사건번호·사건명·쟁점·선고결과) ····· 305

24.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관련 담당사건 전체 (해당기간, 1·2심 결과 및 판결문) ····· 306

25. 위 사건의 공동주거침입·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법리 및 양형자료(해당기간, 판단근거 및 양형요소) ····· 307

26.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309

27.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관련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310

28. 과거사·국가배상·재심 관련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311

29. 환경·폐기물시설·행정처분 관련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312

30. 후보자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취소·변경·파기환송된 사건 (전체 재직기간, 원

심·상급심 결과와 사유) ····· 313

31. 대법원 판례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은 판결(전체 재직기간, 관련 판례·결정 포함) ····· 315

32. 변호사회·학계 등이 후보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 (전체 재직기간, 관련 논평·자료) ····· 316

33. 정치인·정당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 (전체 재직기간, 일시·장소·참석자·목적) ·· 317

34. 국회의원·대통령실·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로부터 재판·인사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전체 재직기간, 상대방·내용·처리) ····· 318

35. 담당사건 관련 외부 청탁·압력·탄원 등을 받은 사실 (전체 재직기간, 처리내역 포함) ····· 319

36. 다른 법관에게 특정사건 처리·결과 관련 의견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전체 재직기간, 사건·상대방·내용) ····· 320

37. 법원장·법원행정처·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담당사건 관련 의견·요청을 받은 사실 (전체 재직기간, 사건별 내역) ····· 321

38.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현재 재산 및 연도별 재산변동 (최근 10년,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 322

39. 후보자·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의 구체적 형성과정 (취득~현재, 취득금액·자금출처·증여·상속) ····· 323

40.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매도 현황 (최근 20년, 주소·취득/매도일·금액·자금출처) ····· 324

41. 후보자·배우자의 전체 임대차계약 현황 (최근 20년, 보증금·월세·기간·갱신)325

42.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택청약 신청·당첨·취소 내역 (전체, 청약주택·일

자·결과) ····· 326

43. 2011년경~2021년 역삼동 아파트 임대차 및 갱신계약서 전체 (2011~2021, 최초 계약~퇴거까지) ····· 327

44. 위 아파트가 처남 소유였던 기간의 등기부 및 소유권 변동 (해당기간, 등기부등본) ····· 328

45. 후보자가 처남에게 지급했다는 보증금 3억5천만원 지급자료 (최초 지급시점, 후보자·배우자 출금 및 처남 입금자료) ····· 329

46. 보증금 3억5천만원의 자금출처(당시, 예금·대출·재산자료) ····· 330

47. 거주기간 중 보증금 증감·월세·관리비 등 지급내역 (2011~2021, 계좌거래 증빙) ····· 331

48. 후보자·배우자와 처남 사이 전체 금전거래 (2011~2021, 대여·채무·증여 포함) ····· 332

49. 2021년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경위 (2021, 관련 설명·자료) ····· 333

50. 도곡동 아파트 원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2021~현재, 원 소유자-임차인 계약) ····· 334

51. 처남이 원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월세 (2021~현재, 금융거래 증빙) 335

52. 후보자와 처남 사이 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계약자료 (2021~현재, 계약서·확인서 일체) ····· 336

53.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보증금·월세·관리비·기타 주거비 (2021~현재, 월별 지급내역) ····· 337

54. 원 임대료와 후보자가 처남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 (2021~현재, 연도별 비교표) ····· 338

55. 전대차·공동거주에 대한 원 임대인의 동의 여부 (2021~현재, 동의서 등 증빙) ····· 339

56. 후보자와 처남의 실제 공동거주 여부 확인자료 (2021~현재, 전입·입주·차량·주차등록 등) ····· 340

57. 후보자와 처남의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생활비 부담내역 (2021~현재, 월별 자료) ····· 341

58. 도곡동 임대차 관련 후보자-처남 간 문자·이메일·협의자료 (2021~현재, 관련 자료 일체) ····· 342

59. 특수관계인 간 저가 임대·전대에 따른 세무·법률자문 내역 (관련기간, 자문기관·내용·결과) ····· 343

60. 위 임대차 관련 증여세·소득세 등 수정신고 및 납부내역 (2021~현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 344

61. 최근 15년간 친족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용·거주한 사례(최근 15년, 시가 및 실제 지급액) ····· 345

62. 후보자 보유·보유했던 전체 토지 현황 및 등기부등본 (전체, 함평·고창 토지 포함) ····· 346

63. 토지별 취득일·원인·금액·자금출처·현재 이용현황 (전체, 토지별 구분) ···· 347

64. 상속토지의 피상속인·공동상속인·지분 및 상속세 신고자료 (해당기간, 관련 증빙) 348

65. 매매취득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자료 (해당기간, 계좌자료) ····· 349

66. 농지·임야 직접 경작·관리·임대·위탁 현황 (전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 350

67. 토지 취득 전후 인근 개발계획·도로·산업단지·도시계획 변경자료(취득 전후, 업

무상 정보취득 가능 여부 포함) ····· 351

68.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전체 주식거래 내역 (최근 15년, 종목·수량·매수/매도일·금액) ····· 352

69. 후보자·배우자의 비상장주식·펀드·사모펀드·채권·파생상품 거래(최근 15년, 상품별 구분) ····· 353

70. 후보자 담당사건 기업 또는 계열사 주식을 후보자·가족이 보유한 사례(전체 재직기간, 사건 및 보유기간) ····· 354

71. 주식 보유 등을 이유로 사건 회피·재배당을 요청한 사례 (전체 재직기간, 사건번호 포함) ····· 355

72. 후보자·배우자·자녀가 동일 종목을 보유하게 된 경위 (전체,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포함) ····· 356

73. 후보자·배우자·자녀 사이 주식·현금 계좌 간 이전내역 (최근 15년, 가족 간 이전) 357

74. 후보자·배우자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최근 15년, 금융기관·금액·금리·용도·상환) 358

75. 후보자 및 가족의 사인 간 채권·채무 현황 (최근 15년, 거래경위·상환내역) 359

76. 친족으로부터 무이자·저리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 (최근 15년, 계약서·이자·상환자료) ····· 361

77. 장남·장녀의 현재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과 취득경위 (전체, 취득일·단가·수량·재원) ····· 362

78. 장남·장녀 주요 주식 최초 취득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 (전체,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 363

79.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금융재산 현황 (해당기간, 예금·주식·펀드) 364

80. 후보자·배우자가 자녀 명의 금융거래를 대신한 내역 (전체, 매수·매도 포함) 365

81. 후보자·배우자가 자녀에게 현금·주식 등을 증여한 내역 (전체, 증여일·금액) 366

82. 장모·처남 등 친족이 후보자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 (전체, 동일) ····· 367

83. 자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전체 (전체, 증여자·재산·금액·세액) ····· 368

84. 자녀의 연도별 소득과 재산증가액 비교자료 (2010~현재, 연도별 표 제출) 369

85. 자녀 자체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증가분 및 재원 (2010~현재, 건별 소명) ····· 370

86. 친족이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교육비 중 재산형성에 사용된 금액(최근 15년, 용도별 구분) ····· 371

87. 친족이 자녀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 이상 거래 (최근 15년, 송금자·금액·일자) ····· 372

88. 후보자·배우자의 연도별 총소득 (2010~현재, 근로·이자·배당·기타·퇴직소득) 373

89. 후보자·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자료(2010~현재, 연도별) ····· 374

90.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세·지방세 납부·체납내역 (최근 10년, 세목별) 375

91.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내역 (전체, 관련 증빙) 376

92. 연말정산 과다·부당공제로 추가납부·추징된 내역 (최근 10년, 사유·금액) 377

93. 후보자·배우자의 기부금 납부 및 소득공제 내역 (최근 10년, 기부처·금액) 378

94. 후보자·배우자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 변동자료 (2010~현재, 연도별) ··· 380

95. 가족의 연도별 주거비 지출현황 (2010~현재, 보증금·월세·관리비·이자) · 381

96. 처남·장모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사용이익·채무면제 등을 받은 내역(최근 15년, 경제적 이익별) ····· 382

97. 후보자·배우자와 양가 부모·형제자매 사이 1천만원 이상 금전거래(최근 15년, 송금·대여·상환) ····· 383

98. 배우자의 학력 및 전체 경력(전체, 퇴직일, 퇴직금 수령내역 등 증빙) ·· 384

99. 연도별 소득·재산변동 및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최근 10년, 연도별) ····· 385

100. 직계비속의 학력·경력·현재 직업·직장·직위 및 입사경위 (전체, 자녀별) 386

101. 직계비속 장학금 수령내역(전체, 기관·시기·금액·선정기준) ····· 387

102. 직계비속 해외유학·연수 내역(전체, 국가·기관·기간·비용부담자) ····· 388

103. 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사항(전체, 병역판정·입영·전역·복무내역) ····· 389

104.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국적 및 국적변동(전체, 변동사유 포함) ····· 390

105. 후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전체 재직기간, 처리결과) ····· 391

106. 후보자가 경고·주의·구두주의·인사조치 등을 받은 내역 (전체 재직기간, 사유·처분) ····· 392

107. 법원 내부 감사·감찰·진정·민원·탄원 대상이 된 사건 (전체 재직기간, 사건 및 처리결과) ····· 393

108. 감사원·권익위 등 외부기관 조사·감사 내역 (전체, 처리결과) ····· 394

109.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또는 고소·고발 내역 (전체, 사건·처리결과) ····· 395

110. 후보자가 당사자인 민사·형사·행정소송 (전체, 사건번호·결과) ····· 396

111.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수정·보완·정정한 내역 (전체, 수정사유 등) 397

112. 재산등록 누락·오류로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 (전체, 요구기관·내용) ····· 398

113. 임차보증금 신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위 등의 확인·보완요구 (2011~현재, 관련 문서) ····· 399

114. 법관 재직 중 외부강연 내역(전체 재직기간, 기관·주제·강연료·신고) ···· 400

115. 기고문·도서·논문·연구보고서 전체 목록 (전체, 원문 또는 사본) ····· 401

116. 외부위원회 활동내역 (전체, 기관·기간·역할·수당) ····· 402

117. 법인·재단·사단법인 등의 고문·이사·자문 활동 (전체, 활동 및 보수) ····· 403

118. 공개 SNS 게시물(최근 10년, 게시일·내용) ····· 404

119. 후보자·배우자와 처남 사이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최근 20년, 전체 거래) ····· 405

120. 후보자·배우자와 장모 사이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최근 20년, 전체 거래) ····· 406

121. 처남·장모 소유 카드·자동차·회원권·부동산 등을 사용한 사실 (최근 20년, 사용시간·대가) ····· 407

122. 친족이 가족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차량비·여행비 등을 대신 부담한 사례(최근 20년, 항목별 금액) ····· 408

123. 친족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내역(최근 20년, 정상가격 대비 비교) ····· 409

124. 후보자 가족과 처남·장모 가족의 공동명의 재산(전체, 금융·부동산·보험·회원권) ····· 410

125.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이후 후보자·배우자·자녀 재산변동(추천이후~현재, 예

금·주식·부동산) ····· 411

126. 추천 이후 증여세·소득세 등을 추가·수정 신고한 사실(추천이후~현재, 신고일·세목·금액) ····· 412

127. 추천 이후 친족 간 채권·채무 및 금전거래를 정산한 사실 (추천이후~현재, 관련 자료) ····· 413

128. 추천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신규작성·변경한 사실 (추천이후~현재, 변경 전·후 계약) ····· 414

129. 추천 이후 처남과 임대차 관련 계약서·확인서·차용증 등을 새로 작성한 사실(추천이후~현재, 작성일·내용) ····· 415

130. 대통령실·대법원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재산·임대차·증여세 등 소명요구 받은 자료(후보검증기간,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 416

131.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부·재판 독립의 의미 및 제도적 개선방안(현재, 서면답변) ····· 417

132.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인사권과 개별 법관의 재판독립 관계 (현재, 서면답변) ····· 418

133. 법원행정처 권한·조직 개편 및 법원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현재, 서면답변) ····· 419

134.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서면답변) ····· 420

135. 전관예우 존재 여부와 수임·취업제한 강화에 대한 견해 (현재, 서면답변) ··· 422

136.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과 구체적 기준 (현재, 서면답변) ····· 423

137. 대법관 증원 및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 (현재, 서면답변) ····· 425

138.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안 (현재, 서면답변) ····· 426
139. 법관의 정치적 중립 및 SNS·정치적 표현 허용범위 (현재, 서면답변) ··· 427
140. AI·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와 사법부 대응방향 (현재, 서면답변) ····· 428
141. AI를 재판·사법행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현재, 서면답변) ····· 430
142.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질서 충돌 시 판단기준 (현재, 서면답변) ····· 431
143.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건에서 법원의 권리구제 원칙 (현재, 서면답변) ····· 432
144.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원의 역할 (현재, 서면답변) ····· 433
14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허위정보 규제 간 판단기준 (현재, 서면답변) 434
146. 국민 여론과 법률적 판단이 충돌할 때 법관의 태도 (현재, 서면답변) · 435
147. 대법원 다수의견과 본인의 법률적 소신이 다른 경우 별개의견·반대의견 제시 여부(현재, 서면답변) ····· 436
148. 대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3가지 및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현재, 서면답변) ····· 437
149. 대법관 임명 시 중점을 둘 법률·사법정책적 과제 (현재, 서면답변) ····· 439
150. 과거 선고한 판결 중 현재 판단이 달라졌거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현재, 서면답변) 440
151. 후보자 자신의 사법철학과 판결성향에 대한 평가 (현재, 서면답변) ····· 441
152. 법률 문언과 구체적 정의가 충돌할 경우 대법관의 태도 (현재, 서면답변) ·· 443
153.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사건의 정치적 영향 배제방안 (현재, 서면답변) 445

154. 정치권·행정부 등이 대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대응방안(현재, 서면답변) ····· 446

155.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대법관'의 기준 (현재, 서면답변) ····· 447

156.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현재, 서면답변) ····· 448

157.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현재, 서면답변) 449

158. 청와대의 김성수 후보자 제청 수용과 손봉기 후보자 제청 거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현재, 서면답변) ····· 450

159. 이재명 재판 중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6조 적용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현재, 서면답변) ····· 451

160.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은? (현재, 서면답변) ····· 452

161. 헌법 제10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각각 관여하도록 한 헌법적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453

162. 동법 동조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단순한 절차적 권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인간? ····· 454

163.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에까지 관여하면 삼권분립정신 훼손인가, 아닌가?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보나? ····· 455

164.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나? ····· 456

165.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나? ····· 457

166. 대통령의 반복적인 임명 거부 또는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허용되는 임명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경우, △거부 횟수 △거부 사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제청 요구 여부 △정치적 목적의 유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 구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458

167.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대법원장은 헌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나? ····· 459

168.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협의 또는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의 판단은? ····· 460

169.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되는 반면, 법관은 다르다는 근거로, 이른바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헌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 461

170.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권력분립 원리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나? ····· 462

171. 다수당(대통령 포함)이 선거 결과나 국민 다수의 의사를 근거로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나? ····· 463

172. 국민 다수의 여론과 법관이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 대법관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 464

173.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이후,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에 법률상 문제는 없는가? ····· 465

174.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반복될 경우, 향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뿐 아니라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게 될 위험이 어떤게 있다고 보나? ····· 466

175.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사법부 인사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 467

176.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추천절차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갖는 법적·제도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468

177.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완료된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특정인을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나? ····· 469

178. 대통령이 기존 추천 후보군 가운데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한다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 및 후보자 선택권을 대통령이 사실상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470

179. 대통령이 후보군의 범위와 최종 후보자 선택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471

180. 헌법 제40조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상당 부분이 국회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역시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한계를 받는다고 보나? ····· 472

181.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이른바 법왜곡죄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입법이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나? ····· 473

182. 사법개혁 입법의 실제 목적이나 효과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법관을 압박·위축시키거나 △특정 정부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력분립 및 사법부 독립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474

183.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입법에도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나? ····· 475

184. 재판 적체 해소나 사건 증가 대응과 같은 사법행정상의 필요가 아니라 특정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 가능한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변경하는 것이 대법관 증원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476

185.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권력분립 및 헌법 제101조·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과 법관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477

186. 대법관 증원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증원의 규모와 속도 △사건 수 및 업무량 등 객관적 필요성 △입법 추진 시점 △입법 목적 △특정 대통령의 추가 임명 가능 인원 △대법원 구성에 미치는 효과 등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478

187. 대법관은 자신을 제청한 대법원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또는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국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보나? ····· 479

188.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론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면 그에 따라 판결하겠나? ····· 480

189. 정부의 핵심 정책에 관한 사건에서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이나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법률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후보자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겠나? ····· 481

190. 국회 다수당이나 국민 다수의 여론이 특정한 재판 결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103조에 따라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할 수 있나? ····· 482

191.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사법적 독립성이란 무엇이며, 후보자 본인은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자세와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기 바람. ····· 483

192.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이라고 보나? ····· 485

193.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보나? 486

194.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나? ····· 487

195.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무제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나? ···· 488

196.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 또는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면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489

197. 국민주권 원리 또는 선거 결과를 근거로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나? ····· 490

198. 대통령과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헌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나? ····· 491

199. 국회의 입법권은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받는다고 보나? ····· 492

200.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대법원 인적 구성 변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493

201.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면 외부의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보나? ····· 494

202.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대법원장·국회·정당 또는 여론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할 수 있나? ····· 495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 ····· 499

1. 헌법 제104조 제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각 어떠한 성격과 한계를 가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생각합니까? ····· 499

2.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00

3.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재제청 요구'를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01

4.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협의가 헌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까? ····· 502

5.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합니까? ····· 503

6.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 504

7. 대법원장이 동시에 제청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일부 후보자만 국회에 보내고 나머지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합니까? ·· 505

8.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특정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06

9.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07

10.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대통령의 임명 여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08

11.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제청·임명권 충돌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09

12.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장이 응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10

1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다시 사실상 선별하는 구조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511

14.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재판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 512

15. 대통령 또는 국회의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동의안 제출·처리에 법정기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13

16.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헌법상 법관 독립 원칙과 양립한다고 생각합니까? ····· 514

17. 법률해석의 오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법 왜곡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16

18. 법왜곡죄가 법관의 소신 있는 법률해석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517

19.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됐다는 이유로 하급심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18

20. 수사기관이 판결의 법률해석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519

21. 법왜곡죄가 유지된다면 구성요건과 고의의 인정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20

22.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재판행위에도 법왜곡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521

23. 법관과 검사에게 동일한 법왜곡죄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각각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522

24. 향후 법왜곡죄 운영 과정에서 재판 독립 침해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23

25.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524

26.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25

27.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26

28. 재판소원의 심판 범위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27

29. 재판소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28

30. 재판소원이 재판의 확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529

31.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충돌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530

32. 현재 14명인 대법원장·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531

33.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과 상고허가제 등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것 가운데 어느 방안이 상고심 적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532

34. 대법관이 26명으로 확대될 경우 현행 전원합의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533

35. 단기간에 다수의 대법관을 특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가 대법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534

36.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의 계속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 535

37.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36

38.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보장과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이 충돌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37

39.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합니까? ····· 538

40.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이 있다면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 539

41.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40

42.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41

43.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그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542

44.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관에게 제척·기피 사유가 없더라도 자발적 회피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43

45.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44

46.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 545

47.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546

48.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권리구제

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547

49. 경찰 등의 수사가 부실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548

50.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49

51.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부실이나 증거 누락으로 억울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50

52. 수사·기소 분리 이후 법원의 영장심사 기능과 증거능력 심사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51

53.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52

54.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을 폐지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553

55. 형사사법체계가 단기간에 크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 공백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54

56. 현재 국민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까? ····· 555

57.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사건 증가, 법관 부족, 재판 운영방식, 법관 인사제도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56

58.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사건의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처리기간은 법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 557

59. 법정 처리기간이나 합리적 재판기간을 반복적으로 넘긴 재판에 대해 별도의

관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558

60. 장기미제 사건의 보유 건수와 처리기간을 법관 인사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59

6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60

62. 대법원이 중요한 법률문제에 집중하도록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561

63.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법관·재판연구 인력을 늘리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62

64.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영상재판·전자소송·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63

65.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발생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564

66.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은 단순히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65

67. 법관이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법관윤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566

68.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세법상 성격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67

69.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약정된 대가가 실제로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유상거래로 인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568

70.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한쪽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세법상 증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69

71. 타인의 재산을 제3자가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법률상 필요한 경우, 그 동의는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70

72. 법관이 친족으로부터 주거·생활비 등 장기간 반복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직접 현금을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법관윤리와 이해충돌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71

73. 고위공직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납세의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회성 착오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72

74. 인사청문 과정에서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계약관계를 정리하면 과거의 도덕성·적격성 문제도 모두 해소된다고 생각합니까? ····· 573

75.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와 국민에게 자신의 재산·세금·가족관계와 관련한 해명을 할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까? ····· 574

76.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한 해명이 이후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기억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575

77. 법관의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이 누락된 경우 단순 보완만으로 종결하는 것과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576

78. 법관의 친족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법관이 그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관련 업종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77

79.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금전 이해관계뿐 아니라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이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78

80.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윤리·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관이라면 스스로의 재산·납세·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법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579

81.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80

82.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81

83.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폐지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582

84.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83

85.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과 조합원별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584

86. 포털·SNS·온라인 플랫폼이 명백한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 현재보다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85

87. 허위정보·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86

88. 국가보안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587

89.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88

90. 부정부패·선거범죄 등 공직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589

91.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정치관여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90

92.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에서 법원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사법기관 보호 사이의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591

93.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생성형 AI·SNS 시대의 플랫폼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92

94. 후보자는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로동 농민들의 재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길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재심요건이나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593

95. 후보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건에서 지역주민의 민원만으로 공익상 필요한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전체 사회의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떠한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94

96. 후보자가 약 28년의 법관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3건과 각각의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법적 가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95

97. 후보자의 판결 가운데 상급심에서 결론 또는 주요 법리가 변경된 사건 중 후보자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97

98.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판례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98

99. 대법관이 자신의 소신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법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까? ····· 599

100. 대통령·정부·국회 다수당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건을 맡더라도 임명권자나 정치적 파장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률과 증거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 600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법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법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다수가 동조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이 남는다면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담대함은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다수에 가려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한자리에 놓고 조율하는 균형감각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법권 역시 그 뿌리는 국민에게 있으므로,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청하는 자세로 저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겠습니다.

2. 대법관 제청을 수락한 이유는?

○ 저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청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에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 그럼에도 제청을 받아들인 것은,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소명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를 피하지 않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당사자가 누구이든 송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며,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3. 현재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 3가지를 뽑는다면?

○ 현재 대법원 판결과 운영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상고심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함께 높이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상고심 운영방식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판결의 이유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법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사건에서는 결론뿐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서의 표현과 기재 방식도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의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 결과가 법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대법원 구성과 사건 구조에 맞추어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충실한 토론과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의 판결 중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기억에 남는 3가지는?

○ 지난 28년간 판사로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무조건 재판의 결론에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경청하고 법의 적용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자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로 통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형식적인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한 사건에서, 차량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면밀히 살펴 유족급여를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6154)을 꼽을 수 있습니다.

○ 평생 탄광에서 일한 광부가 진폐증과 폐렴, 당뇨병성 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한 사건에서, 질병 간의 상호작용 경로를 정밀하게 심리하여 고령 근로자 유족을 구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3472)도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을 취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누58944), 강제성 있는 회식 자리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09누4441) 등을 통해, 행정청의 형식적인 법 적용만으로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 새로운 사회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 입법으로 이를 모두 예상하고 미리 규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존 법리를 새로운 현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였던 사건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되었던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당시 명예훼손에 관한 기존 법리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전제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포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포털은 스스로를 단순한 정보 전달 통로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기사를 선별하여 게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매체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반면, 기존 언론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 균형점을 찾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 포털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는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정립하였고, 이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했다고 평가하는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사법행정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험을 계기로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 그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활성화, 사법행정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확대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고, 법원 내부 문화도 과거보다 수평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개별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에도 사법행정의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관들이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판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헌정질서의 파괴에 항거한 정당한 시민 저항으로 확인되었고, 시민들이 생명까지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규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지향할 가치와 방향까지 담아내는 근본규범이고, 개헌의 최종적인 주체는 국민이므로 전문에 어떤 역사를 새길 것인지도 결국 국민이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길 것인지는 각계의 의견을 널리 듣고 공론화를 거친 뒤 국민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8.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형사책임과 민사상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법률제도로 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문제는 대상 범죄의 범위, 피해자 권리구제의 필요성, 법적 안정성, 해외 사례와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부여하고(제12조 제1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5항).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경우 헌법 위반에 관한 논란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충분한 헌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우려와 요구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양형에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중대한 형사정책적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형이 현행법상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법관이 부득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의 가능성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범행의 죄질이 극히 중대하여 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이나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극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인정되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해지는 경향이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청소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되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교화하여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 결국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의료조력사망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등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가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취약한 환자가 사회적·경제적 압박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내몰릴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윤리적·종교적·의학적 쟁점도 얽혀 있어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대상 환자의 범위, 의사 확인의 방법, 남용 방지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국민들의 인식,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4.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체포·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으며, 주요 개정규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각 수사기관의 조직과 실무, 현행 제도와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개편인 만큼, 제도 변화로 인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방안과 실무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15.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향후 사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 수사와 공소의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심사와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기능입니다.

○ 이는 새로운 체계 하에서 법원의 권한을 더 넓히거나 심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가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등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심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부족한 수사를 보충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기관으로서 영장심사와 증거법칙에 따른 사법적 통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원의 영장심사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압수수색 영장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오늘날 각종 정보와 의사소통 자료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 및 유통되고, 공적인 정보는 물론 극히 내밀한 사적인 정보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자기기에 대량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이에 일정한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임의적 대면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대상의 특정 등 영장발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법관에게 추가적인 심리수단을 부여하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될 경우 기관 간 사건 이송이나 수사·기소 판단의 불일치 등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형사사법체계의 조직과 권한 배분은 기본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영역이지만,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재판절차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절차, 사건기록의 송부와 접수, 증거조사 등 변경된 법률에 맞추어 필요한 규칙·예규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관과 직원이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기록의 이관·연계 등 절차적 사항을 원활히 협의하여 재판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의사와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함. 현행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판기록의 열람·등사, 피해자 진술 시 비공개 심리 등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진술 기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가 재판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절차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변안전이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의견과 사정이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서면질의】

19.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임에도 재판부나 지역 등에 따라 양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양형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양형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에도 양형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법관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양형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퇴직 후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위 법조인이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자신이 재직기간 중 쌓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관예우의 논란 등으로 말미암아 사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고위직 판검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신뢰 증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피와 회피 제도의 활성화, 연고관계 재배당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소송관계인과 법관의 기일 외 의사소통금지,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통하여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도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다각적이고 지속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개변론을 확대하고 공개변론을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및 이에 대한 중계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 과정의 개방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개변론의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고 이에 대한 중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판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송 절차가 지연되거나 본안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중대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내실 있고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재판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재판지연은 어느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최근 사건이 복잡·전문화되면서 장기간 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증가한 점, 증거조사와 감정절차의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의 평균 연령과 경력이 높아지는 등 재판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점은 재판지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사건관리와 재판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대법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과 상고허가제·상고법원 등 그동안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대법원은 과도한 상고사건의 부담으로 인하여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상고심의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게 하는 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고법원 도입 역시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고심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각각 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현 단계에서 상고제한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찬반의 입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대법관 증원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대법원의 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며,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007년 도입되어 2009년 3월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고, 그동안 훌륭한 법조인이 배출되는 등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임용된 재판연구원 등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데, 그 역량과 다양성에서 제도의 성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우친다는 지적, 변호사 배출 규모에 관한 논란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교육의 실무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장학과 지원을 확충하는 등의 보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조인 양성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원칙적으로 교육부와 법무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

각하며, 사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에 협력하고 재판연구원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25. 다양한 법률실무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성품,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법조일원화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법관 처우를 통하여 우수한 능력과 자질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당시 국회에서 법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법관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판결문 공개 확대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판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도 그동안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등을 통하여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미확정 민사(행정·특허·선거 포함) 판결서가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하급심 형사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업비밀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판결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방법 등 판결서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서비스와 재판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재판 및 사법행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인공지능은 법령 · 판례 검색 지원, 재판자료의 분류 · 요약 등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반복적인 사법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공지능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재판의 결론은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및 법령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법령 · 판례나 부정확한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활용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판의 공정성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동일 법원에 속한 재판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해 동일 심급에서 상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재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 동일한 법원과 심급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재판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유사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의 차이가 어떠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대법원이 하급심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는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판부 사이에 판례와 연구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형사사건에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범죄의 양상과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른 양형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양형 교육과 양형기준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 특정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해당 판결과 유·무죄 또는 양형 판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피고인의 사건까지 담당할 경우 예단이나 공판중심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 법관은 개별 사건에서 공판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독립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사건을 먼저 심리·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선행사건에서 판단한 내용과 후행사건의 쟁점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정도, 선행판결에서 후행사건 피고인의 행위나 책임에 관하여 어느 정도 판단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척·기피·회피 및 사건배당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과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 적용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현행법상 사법적 제재수단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직권남용죄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상당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형사책임이나 징계·민사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제재수단이 충분한지,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살펴 입법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1. 현행「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대화 당사자의 녹음 자유와 상대방의 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이러한 당사자 녹음은 분쟁이나 범죄 피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발언이 동의 없이 녹음·보관되거나 이용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이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우선하기보다는 녹음의 목적과 필요성, 대화의 성격과 장소, 녹음된 내용의 이용·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 녹음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의 증거 확보나 사회적 약자의 자기보호 수단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당한 증거 확보와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제3자뇌물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제3자뇌물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지역사회 기여나 공공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개발이익의 공익 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제3자뇌물죄의 성립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당한 행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과 공직수행의 공정성·청렴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법행정과 예산 집행 등 재판 외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필요한 설명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나 제도 개선 추진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심의와 통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민주적 통제가 개별 사건의 심리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하되, 재판 외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4.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법관의 오판이나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관 징계 및 윤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국민들은 법관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비위는 사법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징계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보다 높은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받는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윤리를 강화하는 등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법관에 대하여 엄정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최종심인 동시에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률의 문언과 기존 판례를 존중하는 사법적 안정성, 변화된 사회현실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어떠한 원칙과 자세로 판단할 것인지? 또한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고 싶은 우리 사법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률의 문언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사회현실과 국민의 법감정,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가 그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요소만을 일률적으로 우선하기보다는 각 가치의 헌법적 위상과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하겠습니다.

○ 특히 기존 법리가 새로운 현실에서도 정당성을 유지하는지, 다수의 인식이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사회변화, 기본권 보장이 가능한 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 동안에는 재판지연을 해소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 최근 사법부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법관 증원, 감정관리제도와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을 추진해 온 것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곽상언 위원 서면질의》

1.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형법」 제123조의2가 신설·시행되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제도까지 도입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점에 있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다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법관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이고,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 원칙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정법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왜곡죄 시행이 재판 독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법왜곡죄가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재판부 구성원(1인 혹은 3인)이 오롯이 배당된 사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며, 그에 대한 평가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법왜곡죄 시행이 법관들의 소신과 용기를 꺾지 않을까 염려되기는 합니다.

○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의 결론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법관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개정법이 합리적 범위의 법령 해석에 따른 재량적 판단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가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도 충실히 구현되도록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판을 담당한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법행정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재판부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법관의 업무수행을 위축시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사법행정 차원에서 직무소송 지원 절차가 잘 정비될 필요가 있고, 형사법관에 대한 법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법률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에 관한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 제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도 클 것인데, 이러한 염려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정도에 그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전에 최대한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법률시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법원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형사사법체계의 조직과 권한 배분은 기본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영역이지만,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재판절차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절차, 사건기록의 송부와 접수, 증거조사 등 변경된 법률에 맞추어 필요한 규칙·예규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관과 직원이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기록의 이관·연계 등 절차적 사항을 원활히 협의하여 재판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하여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하여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관 증원과 함께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이 충원된다면, 개별 대법관의 사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사건의 심리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상고심의 재판 지연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면서 전원합의체의 규모도 확대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제약되거나 합의 과정에서 개별 대법관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법관 증원 이후에도 그 기능이 충실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의 재판역량 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동시에, 법령 해석의 통일과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재판부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신뢰를 쌓기는 싸라기눈을 모으는 것만큼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 순간이다”는 말을 선배 법관들로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법부로서는 이러한 평가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불신을 느끼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특정 조사결과의 높고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함께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을 줄이고 판결의 이유를 보다 충실히 제시하며, 국민이 재판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영호 위원 서면질의》

1.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좌우명이나 모토는?

○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흠흠’(欽欽, 정약용의 저서 제목인 흠흠신서에 나오는 말),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훨씬 더 심오한 뜻을 가진 문구이지만, 재판업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 ‘재판 당사자가 어느 누구이든, 송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도 애쓰지도 마라’[칼 세이건: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을 떠올리면서]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법관으로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과 그 이유

○ 개인적으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저의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은, 신속(=업무수행능력+성실성)한 재판, 공정한 재판(당사자들에 대한 중립은 물론 정치적 중립도 견지, 절차적 만족감)을 함은 물론이고, 청렴성과 도덕성도 갖춘 소위 '법관다운 법관'입니다. 또한 헌법정신을 재판에 반영해서 재판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부하는 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한 장발장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자베르 경감의 대비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 늘 마주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은 자베르 경감처럼 법에 충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책을 통하여 기록이 얇든 두껍든 그 안에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4. 최근 들어 가장 흥미롭게 읽은 책과 그 이유

○ 콜린 매컬로의 '로마의 일인자'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작가가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성이 치밀하여, 작가의 집필 준비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서를 이렇게 세세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구조 또한 탄탄하게 작성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 또한 개인적인 소감으로, 그 영웅들 또한 모두 흙으로 돌아갔고, 옛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되, 다만 헛된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5. 법관 업무와 별도로 법원 안팎에서 학술연구단체나 시민단체, 동아리 등 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험, 또는 현재 소속되어 활동중인 단체나 그룹이 있습니까? 어떤 성격의 어떤 단체인가?

○ 현재 집행법연구회, 언론법분야연구회, 노동법분야연구회, 형사법연구회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판부 사무분담과 관련된 전문분야 연구회들로, 재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부족으로 제게 배당된 사건 처리에도 급급한 상황이라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균형감각을 기르거나 일반 국민들의 사법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 우리 사회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시선이나 비판으로부터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은?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 중 하나입니다.

○ 늘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을 읊조리며 당사자의 영향력, 정치적 상황 등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의 이유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위 원칙을 지켜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8.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이익과 충돌할 때, 법관으로서 판단의 우선순위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해 왔나, 구체적인 사례는?

○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소위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부에 다수의 논리에 경도되지 말고 소수자의 권리도 존중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다수가 바라는 상황, 효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통해서 '이상'(소수가 바라는 상황)과 현실의 간극을 조금씩이나마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법원은 법을 기계적 ·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평등원칙에 입각한 법해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 내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관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을 맞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던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의한 재심재판을 통해 토지를 빼앗긴 후 한참이 지나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저는 위 사건에서 농민들이 받았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수십 년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중요한 책무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9. 처남 소유 아파트 전대차 계약 관련 해명 및 자료

○ 후보자는 2011년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처남이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410동 404호를 전세보증금 17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3년 5월 같은 아파트 410동 904호를 전세보증금 14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2025년 5월 전세보증금 15억 2,250만 원(5% 증액)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위 도곡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위 역삼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함), 처남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이에 관한 증빙서류로,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11년 임대차계약서', '2011년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2021년 임대차계약서', '2021년 전대차계약서', '2023년 임대차계약서', '2023년 전대차계약서', '2025년 임대차계약서', '후보자 계좌이체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증여서 탈루 의혹을 제기되자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 후보자가 2011년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은 당시의 시세에 부합하는 금액입니다(공통요구자료 중 '2011년 전세 시세' 참조).

○ 이후 10년간 전세보증금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미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1.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의미인가?

○ 현재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검토했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신고를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기에 세무서에서 곧바로 세액결정을 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절차는 청문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처리하겠습니다.

12. 전셋집을 재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은 흔치 않은데,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 경위는?

○ 실제로는 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와 처남 사이의 전대차계약서는 ①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후보자의 처남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채권(해지된 역삼동 아파트) 3억 5,000만 원의 변동 내역에 대한 근거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것과 ② 처남이 전세보증금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이 미안하여, 적어도 후보자가 절반 정도는 부담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되었을 뿐, 실제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월 80만 원은 단순한 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처남이 전세보증금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이 미안하여, 전세보증금의 절반 정도의 금액에서 후보자가 부담한 3억 5,00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도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명확히 알렸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처남 및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후보자 가족이 처남과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은 임대인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다만, 실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적은 부담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3. 후보자께서는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처남 가족까지 모두 함께 동거하고 있나? 이 또한 흔치 않은 일인데, 처남과 함께 살게 된 경위는?

○ 2021년 처남이 다니던 회사의 본사가 판교에서 역삼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처남도 주거지를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면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살던 역삼동 아파트는 좁아서 처남까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후보자의 장모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남에게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 것을 권유하였고(당시 후보자의 장모는, 원래 친구를 좋아하는 처남이 경제적 여유까지 생기자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이 때문에 누나의 관리, 감독하에 두겠다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장모의 권유로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가족이 살던 기존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도곡동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처남과 후보자 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처남이 2023년 잠시 별도 거주를 한 적이 있었으나, 장모의 질책에다 스스로 불편도 느껴 2달 만에 다시 도곡동 아파트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 미혼 성년인 처남이 필요에 따라 업무공간 등으로 오피스텔을 가끔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주거지를 옮겼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14. 월세는 실제 지급했는지?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망)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만, 후보자는 지급하지 못한 돈을 항상 채무로 생각해 왔고,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증빙자료는 공통요구자료 중 '후보자 계좌이체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06년부터 4년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담당관으로, 윤리감사 심의관으로 사법행정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나?

○ 후보자는 2006. 2. 20.부터 2008. 2. 20.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의 직을 수행하였고, 윤리감사관 업무 보좌, 윤리감사관실 내 각종 기획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16. 법관연수제도 개편 : 개편 취지와 내용, 성과

※ 연수 진행방식의 재정립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면 확대된 원격연수는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인 반면 실제 참여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과정에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오프라인 전용, 오프라인·원격 병행, 온라인 전용의 구분 원칙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소통과 유대 형성이 중요한 경력별 연수와 직책별 연수는 오프라인 전용으로, 지식 전달 중심의 신청·소액·과태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실무는 온라인 전용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연수의 성격에 부합하는 진행방식을 정착시켰습니다.

※ 경력별 연수의 수요자 중심 개편

○ 각 경력별로 처한 상황과 관심이 다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강의가 반복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만족도가 저조하던 코칭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소통능력 등 수요가 높은 주제의 교양강좌로 재구성하였고, 원외연수가 포함된 경력별 연수Ⅳ~Ⅵ의 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였으며, 대상자 명단을 각 연수 시작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업무의 노하우를 교환할 기회 마련을 위해 2024년 경력별 연수Ⅰ~Ⅲ에 연차별 주제의 간담회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임법관연수의 평가방식 및 교과 개편

○ 종전 기록형 교과의 과제물 평가방식은 신임법관이 실제 판결서를 참조하여 그 결론에 맞추어 과제를 작성할 수 있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교육효과도 반감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험평가 방식(민사·형사 서술형 및 기록형 총 5회)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실사례 토론 교과를 폐지하고 판결서 작성연습·합의연습 교과를 확대하는 한편 기록형 교과의 과제작성 시간을 1과목당 3시수에서 4~5시수로 늘렸으며, 시험평가 도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연수과정의 신설·정비 및 접근성 제고

○ 법관연수가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수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여, 2023년 23개 과정을 신설하고 19개 과정을, 2024년 21개 과정을 신설하고 19개 과정을 각 정비하였습니다. 원로법관 연수를 최초로 신설하였고, 장기연구과정과 재판실무편람 연계 연구과정을 확대하였으며, 전국 법관 설문으로 주제를 정하는 특정 주제 세미나와 기본법률총서 연계 법관연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강 없이 교재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2024년 발행부수를 2배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편집하여 1개월 이내 이러닝 센터에 제공하는 원칙을 정하는 등 연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7.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 재판연구원

○ 신규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며, 법전원 출신, 법조경력자, 법무관 경력자로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신설하여 29명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하였고(2023. 2. 13. ~ 2. 24.), 2024년에는 법조경력자 25명(1. 29. ~ 2. 27.), 법전원 출신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후보자 122명(3. 4. ~ 4. 22.), 법무관 경력자 6명(8. 1. ~ 8. 9.)에 대한 교육을 각 실시하였습니다.

※ 군판사·군법무관

○ 각 군 군판사를 대상으로 한 군판사 직무교육, 기성 군법무관을 대상으로 한 군법무관 전문화 교육, 신임 장기군법무관 위탁교육을 각 운영하였습니다.

※ 사법보좌관

○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약 5개월 과정)과 사법보좌관 직무수행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후보자 교육은 2023년 19기 50명(1. 2. ~ 6. 2.), 2024년 20기 44명(1. 2. ~ 5. 31.)을 대상으로 각 실시하였고, 직무수행연수는 2~3년차 사법보좌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18. 교육에 활용한 교재와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었는지?

*강의안 첨부, 관련 교재 목록 첨부 요망

○ 후보자의 수석교수 재직 당시 교육에 활용한 교재(강의안)와 강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교 육	일 시	강의 내용	비고
2023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2023. 11. 8.	법관다움에 관한 고민	별첨 참조
2024	2024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현지연수	2024 8. 19.	한국 영상재판의 과거와 현재	별첨 참조
		2024. 8. 20.	한국의 법관윤리 개관	별첨 참조
	2024년도 일반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2024. 12. 11.	슬기로운 법관 생활	

19. 국제협력업무 확대 :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 2023년도

- 사법역량강화 초청연수

  - 2023. 4. 23. ~ 2023. 4. 29. 몽골 대법관 8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민사소송제도 중 변론준비절차, 사법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초청연수 실시. 대한민국의 발전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법정보화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2023. 5. 28. ~ 2023. 6. 3. 라오스 대법관 등 8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원의 소송절차'를 주제로 한 초청연수 실시. 지식재산권 소송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라오스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우리 교민 및 기업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법적 보호를 받는데 기여

- KOICA 우즈베키스탄 2년차 초청연수

  - 2023. 8. 6. ~ 2023. 8. 19. 우즈베키스탄 판사 및 법원공무원 15인을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사법업무 디지털화를 위한 2차년도 인적역량강화연수 실시.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하여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법부의 디지털 기술 이

해도를 증진. 이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법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

- 국제콘퍼런스 개최

  -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여 2023. 5. 9. 국제협력기념관을 개관하고 같은 해 11. 29. 「패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공지능·기후위기 관련 국내외 전문가 교류의 장을 마련

○ 2024년도

- 사법역량강화 초청연수

  - 2024. 4. 29. ~ 2024. 5. 6. 네팔 판사 등 8명을 대상으로 '사법정보화 및 형사재판의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 초청연수 실시. 네팔 사법부의 전자소송 및 전자법원 도입의 이점을 알리고, 2011년부터 꾸준한 방문과 연수로 형성된 상호 신뢰 확인

  - 2024. 7. 6. ~ 2024. 7. 13. 방글라데시 대법관 등 8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와 전자소송 소개, 지식재산권 소송 개관'이라는 주제로 한 초청연수 실시.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의 의류수출국 겸 원부자재 수입국으로 국내 의류기업 등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바, 방글라데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내에서 대한민국 기업

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기여

-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 개최

  -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를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치하고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준비를 총괄하여 2024. 11. 4.부터 11. 7.까지 「기로에 선 사법교육 : 사법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개최하였고(1개 특별대담, 40개 분과 세션, 국내외 발제자 120여 명), 일자별 프로그램을 법관연수 4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국내 법관의 참여 확대

- KOICA 우즈베키스탄 3년차 현지연수

  - 2024. 8. 17. ~2024. 8. 2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판사 및 법원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법업무 디지털화를 위한 3차년도 인적역량강화연수 실시. 후보자는 한국 영상재판의 과거와 현재(2024. 8. 19.), 한국의 법관윤리 개관(2024. 8. 20.)을 주제로 강의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위한 토론 진행. 이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사법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한민국 교민 및 기업 보호에 기여

20. 각종 실무서 발간 : 어떤 실무서들이었는지 관련 목록

○ 요청하신 자료는 연수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과 관련, 해당 변호사회가 밝힌 우수법관 선정 사유는?

○ 당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우수법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모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현행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은 무엇이며, 개선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법부는 법치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함께 재판을 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차에서 존중받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하여 우선 제1심 재판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을 마주하게 되는 제1심을 충실화하여, 제1심 단계에서부터 신속·정확하면서도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사법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사법접근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국민이 시설과 정보에 다가서지 못하여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읽기 쉬운 판결서와 수어통역, 진술조력인, 소송구조와 같은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부의 문턱이 낮아질 때 재판청구권이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전자소송과 인공지능 등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서면질의】

23.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사도 7개월 지연되면서 사법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견해.

○ 노태악 대법관이 2026년 3월 퇴임하신 이후 후임 대법관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각 헌법기관이 상호 존중 속에서 협의하여 절차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4.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

24-1. 사전 협의 없는 서면제청에 대한 견해

○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기존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와 협의 및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 제청은 헌법상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이긴 하나, 실제 제청과정에서 임명권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며, 기존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와 협의 및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및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4-2.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독립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지난 해 5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단시일 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사건에 대한 평가.

○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고,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원은 선거 일정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 및 사건의 기록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상고심의 구체적인 심리 경과와 판단의 당부는 재판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면질의】

26. 현 정부들어 추진된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견해

○ 사법제도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및 법적 안정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소원 도입]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적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

○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하여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하여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 도입]

○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이므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정법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당사자인 민·형사, 행정 소송 관련 현황 및 결과, 결정문, 판결문 일체

○ 후보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최근 10년간의 민·형사, 행정사건을 조회한 결과 해당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민사사건 등(형사사건 제외)은 재판의 당사자가 사건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산조회 결과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없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후보자가 법관시절 선고한 판결 목록 및 판결문 일체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산 조회 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판결문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비실명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송부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실명화된 판결서 사본을 별첨하여 송부 합니다. 그 외 첨부된 판결목록을 참조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노245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노246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736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828
- 서울고등법원 2013나8436
- 서울고등법원 2013나8788
- 서울고등법원 2013나7747
- 서울고등법원 2013나8955

3. 후보자가 선고한 판결문 공개 여부(공개/비공개로 구분)

○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4. 후보자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내역 일체, 부부 증여내역

○ 후보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그 밖에 후보자의 재산공개대상자기간 동안의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신고내역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대상자이었을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료제출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의 학술지 게재 원고 리스트(일자, 학술지명, 학술지급, 공동저자, 원문파일)

○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나타난 후보자의 저작물 2건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위 저작물 2건은 별도 학술지에 게재되지는 않았습니다.

6. 후보자의 (내부/외부) 연구비 지원 내역 및 연구용역 참여 현황 일체 (일자, 공동연구자, 연구자별 연구비 지원 내역, 연구용역결과물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후보자의 기고문, 사설, 칼럼 등 각종 언론 기고문 일체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중 어떤 권한이 우선하는지?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청권과 임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원리로부터 유래하는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견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대법관 제청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의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임 대법관의 제청절차를 적기에 진행하여 가급적 공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 공석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성과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의 성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 및 후보자 검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사법부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생성형 인공지능은 법령 · 판례 검색, 재판자료의 분류 · 요약, 법원 이용 및 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 · 판례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허위 · 조작된 주장이나 증거의 작성에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생성된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법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 3가지

○ 생성형 인공지능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필요한 판례·법령과 각종 법률문헌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색·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방대한 사건기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사건의 요지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등 기록 검토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복적·정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실제로 사법부에서도 판례·법령·결정례·실무제요·주석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과 같이 재판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환각현상이나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이용자가 결과와 근거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하급심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도 그동안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등을 통하여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미확정 민사(행정·특허·선거 포함) 판결서가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하급심 형사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결서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

14.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공공기관 등이 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정부·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판결서에 편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정부·공공기관을 위한 별도의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기존 판결서 열람 제도를 통한 이용 가능성, 별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판결서 열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업무상 판결서 열람에 대한 수수료 감면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처남 소유 도곡렉슬 아파트를 거주하면서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세 8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매월 80만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이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6. 후보자가 법관 시절 판결한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판결의 요지

○ 판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하게 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문제 되었던 사건들이 조금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위증을 교사하여 확정된 재심판결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던 사안을 바로잡은 구로동 농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2, 372 병합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확정판결이라는 형식이 국가의 불법을 가려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는 이례적 구조로 실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같은 맥락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여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 판결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사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17.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은 후 사법부는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수평적인 사법행정제도를 구현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비롯하여 그 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모습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감사원에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에 대해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또한 대법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격려금을 수령할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나, 국가재정법 및 예산 집행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19. 재판 과정의 속기-녹음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속기·녹음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속기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9조 제1항). 실무상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녹음·속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재판과정에 속기·녹음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의 확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박지혜 위원 서면질의》

1. 본인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 스스로 지명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읽으면서 과분한 말씀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곳에 담겨진 법관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 뒤 광주·해남·안산·제주·청주·수원 등 여러 지역의 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과 법관 교육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력이 두루 고려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 법관으로 일하면서 함께 근무해 온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도 법관으로서 묵묵히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법관 소임이 무엇이며, 후보자는 그에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관의 소임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법령 해석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법관에게는,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낼 담대함,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 그리고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한자리에 놓고 조율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대도시와 지방 여러 곳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민의 생활상을 접하며 사안에 대한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었고, 그 밖에 사법행정과 법관 교육의 경험도 쌓으며 시야를 넓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음에

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계속 다듬어 가겠습니다.

3.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직무에 임할 계획이십니까?

○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들이 사법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경제적 형편이나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편리하게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성을 확보하는 논의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또한 개별 분쟁의 해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법적 물음을 놓치지 않고, 달라진 시대의 요구를 담아낸 해석 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결의 이유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해서 그와 관련된 소송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서울대학교 환경전문대학원에서 ESG 과정을 수료했는데, 그 때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실제 재판업무에도 반영해 보고 싶습니다.

○ 끝으로 늘 제 자신을 살피면서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논의와 견해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4.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기 위하여 헌법이 마련해 둔 안전장치이며, 그 최종적인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은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법정 안에서는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또한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대법원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흔들림 없이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대법원은 법령 해석을 통일하여 하급심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본권 보장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로써 헌법 정신이 국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6. 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고위직 판검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신뢰 증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피와 회피 제도의 활성화, 연고관계 재배당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소송관계인과 법관의 기일 외 의사소통금지,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통하여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도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저는 대법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직을 마친 뒤에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재판실무 경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많이 부족하지만 이를 통하여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8.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적어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대법관 증원을 통하여, 개별 대법관의 사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사건의 심리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상고심의 재판 지연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하여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하여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요청사유서는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재판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요청사유서가 그와 같이 평가해 주신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라고 하여 재판의 결론에서 무조건 유리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들이 처한 실질적인 사정을 세심히 살펴 정당한 권리가 형식적인 이유로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재판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장애 등급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받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누58944)에서, 검사 도구 개정에 따른 수치 편차를 원고의 상태 변화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형식적인 수치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장애인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업체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로 통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형식적인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누26154), 평생 탄광에서 일한 광부가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한 사

건(서울고등법원 2015누63472)에서도 행정청의 형식적인 법 적용만으로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임명제청 요청사유서의 평가에 부합하는 법관이었는지는 겸허히 돌아볼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자 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는 때로 긴장 관계에 놓입니다. 두 가치가 충돌할 때 후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며, 국민의 신뢰는 독립된 재판권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행사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가치가 긴장 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그 문언과 체계를 충실히 살피면서 입법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충실히 심리하며,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수청·공수청·국가수사본부 등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체포·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과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규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각 수사기관의 조직과 실무, 현행 제도와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개편인 만큼, 제도 변화로 인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방안과 실무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12.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재판소원 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입법적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경력법관 선발이 여전히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돼 법원이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자를 선호하고, 그 결과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실무사회 경험을 쌓기보다 시험 준비에 몰두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사회 경험과 여러 법조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지원자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활동 및 공익활동, 실무능력,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무능력과 사회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 최근 연론 조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법부로서는 이러한 평가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불신을 느끼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특정 조사결과의 높고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함께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지연을 줄이고 판결의 이유를 보다 충실히 제시하며, 국민이 재판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5. 현재 대법원 구성이 출신 대학과 직역, 성별, 지역 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출신대학, 직역, 성별, 지역 뿐 아니라 대법관들의 경험과 가치관, 철학의 다양성을 두루 포함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출신대학, 직역, 지역 등의 다양화를 포함하여 대법관 후보자의 경험과 가치관, 철학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확충 논의가 지리적 제약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법률로 고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법률심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전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관련 결정에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소재지의 변경은 헌법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특정 사안이 헌법상 쟁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단정적으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대법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국토균형발전, 사법부의 독립과 기능 등을 두루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사법접근성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사법접근성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법원의 설치나 관할을 검토할 때,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함께 사건 수요, 인구와 교통 여건, 지역 주민의 재판이용 편의와 전문적 재판역량의 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헌법 규정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후위기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과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현행 헌법도 제35조에서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라 기후위기라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미래세대의 권익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389 등)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영역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인데, 이 결정이 앞으로 대법원의 환경·에너지 관련 재판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이전하여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후보자도 사법연수원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후 위기가 후진국, 미래 세대 등에 얼마나 큰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고, 가져오게 될 지에 대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로서는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국제동향과 판례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연구·확립해 나가야 하며, 향후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부담을 적절히 고려하여 살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오랫동안 좁게 인정되어 왔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인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고 확산적인 사안에는 이러한 지역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기후변화는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전통적인 환경피해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 현재 판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적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그 우려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기후변화의 특성에 부합하는 요소를 보다 충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체적 사건을 통해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으로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분쟁에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후위기 대응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고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판례에 따라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은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더욱 직접적일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필요성과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충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입법화된 것으로 기업 등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이 법 제1조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 이러한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 법에 대하여는 과잉처벌 문제를 지적하거나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적용하기에 가혹하다는 의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평가가 나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시행된 지 약 4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판결 선고 건수가

많지 않고, 위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판결례가 집적되고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 법리의 규범적 의미는 무엇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대법원이 판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자는 마땅히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등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은 서로 대립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함께 준수되어야 할 재판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5. 장남 주식 보유 내역 관련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장남의 보유 주식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가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3월 관보에 게재된 장남 주식 보유 목록에는 해당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두 종목을 신규 매입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해당 매입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남의 주식 보유 가액이 2025년에 약 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가분의 자금 출처는 무엇입니까?

○ 위 주식을 올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삼성에스디에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중 일부를 매도한 자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2025년 주식 보유 가액 상승은 주로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의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 후보자의 장남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금은 2025년 12월까지 기준으로 약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장남이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과 명절 등에 받은 돈, 2017년 처남과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처남 1,000만 원, 장모 2,000만 원),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군복무 기간에 받은 급여(매칭지원금 약 600만 원 포함) 등을 모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26. 처남과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 등 관련

2011년 역삼동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처남이었는데, 당시 처남과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설정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후 2021년 최초 도곡렉슬 아파트(410동 404호)로 이사하셨을 당시에는 어떤 계약 형태로 거주하셨습니까?

또한, 2023년 도곡렉슬 410동 904호로 이사하실 당시,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에 대해 7억 5,000만 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때 기존 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씩 처남에게 지급하신 것이 맞습니까?

○ 후보자는 2011년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 처남이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410동 404호를 전세보증금 17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3년 5월 같은 아파트 410동 904호를 전세보증금 14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2025년 5월 전세보증금 15억 2,250만 원(5% 증액)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위 도곡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위 역삼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함), 처남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로는 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와 처남 사이의 전대차계약서는 ① 정기재산신고 시 후보자의 처남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채권 3억 5,000만 원의 변동 내역에 대한 근거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것과 ② 처남이 전세보증금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이 미안하여, 적어도 후보자가 절반 정도는 부담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되었을 뿐, 실제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위 월 80만 원은 단순한 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처남이 전세보증금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이 미안하여, 전세보증금의 절반 정도의 금액에서 후보자가 부담한 3억 5,00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도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명확히 알렸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처남 및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후보자 가족이 처남과 함께 거

주할 것이라는 사실은 임대인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다만, 실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적은 부담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이에 관한 증빙서류로,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11년 임대차계약서', '2011년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2021년 임대차계약서', '2021년 전대차계약서', '2023년 임대차계약서', '2023년 전대차계약서', '2025년 임대차계약서', '후보자 계좌이체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채무 관련

현재 신한은행 금융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사인 간 채무 또한 1억 5,000만 원이 존재합니다. 반면, 앞서 언급된 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목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후보자는 2006년 장인으로부터 5,000만 원, 2011년 숙부로부터 5,000만 원, 2013년 장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습니다.

○ 2006년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200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전보되었고, 안양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 2011년 숙부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1기)로 선발되어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숙부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입니다.

○ 2013년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위 돈을 차용하여, 위 전세보증금 마련 등에 이용한 마이너스 통장 등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공직을 마치는 시기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하였고,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를 당연히 채무로 인식하고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세무사와 상의하여 증여세 등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부승찬 위원 서면질의》

1.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공소취소 제도가 부당한 공소권 행사를 시정하고 피고인을 불필요한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하는 권리구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법원 역시 이른바 '유우성 사건'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위조·변조, 허위진술 강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핵심증거의 의도적 은폐 등 공소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공소를 계속 유지해 최종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법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위조·변조나 허위진술 강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를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공소권 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그 공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소추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를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반드시 최종판결까지 공소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공소가 유지되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유·무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단순한 수사과정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회유·압박 의혹만으로 공소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증거 위·변조, 허위진술 강요, 핵심증거 은폐 등 기존 공소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의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대상이 기존 수사기관일 경우 동일 조직이 과거 수사의 위법성과 공소유지 필요성까지 다시 판단하는 데 이해충돌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조작수사나 조작기소 의혹의 대상이 기존 수사기관 자체인 경우, 동일한 기관이 과거 수사의 적법성과 그에 기초한 공소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경우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또는 공소취소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그 판단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는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논점으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취하할 경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공소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특별검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사·소추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이 특별검사에게 공소유지·공소취소 또는 상소취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취하여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검사에게 맡기고 있고, 특별검사 역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의 권한을 행사하는 형사소추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만으로 특별검사에게 일정한 범위의 소추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취소나 국가가 제기한 상소의 취하를 특별검사에게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기존 검찰과 특별검사 사이의 권한관계,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자기재판 금지 또는 편견 배제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유·무죄와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임. 특별검사는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기관이 아니라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인데,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자기재판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유·무죄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의 공정성에 관한 원칙인 반면,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사정이 위 법언과 상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위 법언과 별개로 특별검사가 종전 수사·기소에 직접 관여한 경우, 소추기관의 객관성이나 이해충돌 방지의 관점에서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학계에서는 공소취소가 위법·부당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권리구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평가함. 수사기관 스스로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해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 공소취소 제도의 경우, 공소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피고인을 불필요한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위법·부당한 사정이 발견되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하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반드시 최종적인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수사과정의 위법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위법이 공소의 근거와 정당성에 미치는 정도,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한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만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혼재됐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며, 특별검사의 추천·임명방식은 수사대상과 추천주체의 관계,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장치 등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결정한 바 있음. 특별검사가 본질적으로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법률이 특별검사에게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이나 헌법에 반한다고 보는지?

○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이고, 현행 형사소송법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공소취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검사에게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그 범위와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7. 현재 대법원은 방대한 상고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인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부담하고 있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음. 현행 대법관 정원만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받을 권리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현 체제에 한계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대법원이 한 해 수만 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한 사람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현실에서, 국민이 최고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원만으로 상고심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법률심 기능을 모두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논의되어 왔고, 국회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방향을 정한 이상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원만으로 사건 수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고, 상고심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가장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 대부분이 재판을 경험

하는 제1심과 항소심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심이 충실해지면 상고의 필요가 줄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인력의 확충, 사실심 심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증원된 대법원이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관 등 지원 조직을 갖추고 전원합의체와 소부의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8.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실제 발의한 바 있고, 2026년에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공포됐음. 정치적 제안 주체와 별개로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하여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하여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대법원 역시 과거 상고심 제도개편과 결합한 제한적 대법관 증원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음. 대법관 정원과 법원의 조직이 「법원조직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입법으로 논의·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관 정원을 포함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조직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로 대법관을 증원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 개정「법원조직법」은 대법관 12명을 일시에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전원합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급심 법관 인력 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연구관 확충, 하급심 인력 보강, 사건배당 및 소부 운영 개선 등 어떠한 보완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지?

○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상고심 재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판연구관 등 필요 인력도 함께 확충하여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제한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다수의 상고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는 것은 100여 명의 법관 재판연구관과 30여 명의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대법관과 긴밀히 협업하며 사건을 연구·검토하는 체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법관 재판연구관의 증원이 사실심을 담당하는 숙련된 법관 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되고 재판 지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사실심의 사건 적체가 심화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심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급심 법관 인력 확충을 비롯한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대법원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헌법은 대법원의 구성과 대법관 임명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관의 구체적인 정원은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음. 상고사건의 증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해 국회가 법률로 대법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영역임에 동의하는지?

○ 헌법이 대법관의 정원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대법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수행하는 상고심으로서의 기능,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실효적 권리구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법왜곡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계기로 기존 직권남용죄만으로 법관·검사 등의 고의적인 법률·증거 왜곡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돼 왔음. 사법부 독립은 개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지, 법관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법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형법」 제123조의2가 신설·시행되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정법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13. 현행 법왜곡죄는 단순한 오판이나 법률해석의 차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과 고의적인 법령의 왜곡 적용, 증거의 인멸·위조·변조 등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제로 할 때 법왜곡죄를 단순히 '판결을 잘못하면 판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관의 법률해석이나 사실인정이 상급심의 판단과 다르거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 독일 형법도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적 오류나 오판이 아니라 객관적·주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왜곡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판시해왔음. 현재 시행 중인 법왜곡죄 역시, 입법과정에서 구성요건상 목적과 고의,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법관의 재판독립과 법관·검사의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 법왜곡죄가 위법·부당한 이익 또는 권익 침해의 목적과 의도적인 법령 오적용 등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재량적 판단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재판행위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고의적인 법 왜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자 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실제 운용 과정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판행위까지 수사대상이 되는 등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시행 경과와 구체적인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이나 고의의 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개정 요부와 범위는 제도의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5.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은 모든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확정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절차도 두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일반적인 '제4심'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만약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헌법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4심제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재판소원의 실제 운용 사례와 심리 범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6. 현행 재판소원의 법률상 청구요건을 보면 단순히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 또는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함.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와 엄격한 청구요건을 운용할 경우 이른바 남소나 '4심화' 우려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단순한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 또는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의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존중하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와 엄격한 청구요건의 운용을 통해 재판소원의 남용이나 사실상 '4심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재판소원의 실제 운용 사례와 심리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확정성 및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독일의 재판소원 역시 일반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다시 판단하는 상급심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심사하는 헌법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역시 상소심에 대한 또 하나의 상급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확정재판의 헌법적 한계를 심사하는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리의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다시 판단하는 상급심으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되고,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서 확정된 재판의 헌법적 한계를 제한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헌법 제111조제1항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법체계, 법적 안정성, 기본권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성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임에 동의하는지?

○ 헌법 규정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헌법상 사법기관의 구조와 권한 배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행정처분이나 입법 등 다른 국가권력 행사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헌법적 통제를 받는 반면, 국민의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확정재판은 종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음.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별도 구제수단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구제를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 확정재판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기존 구제절차와의 관계 및 헌법상 사법체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의 확정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은 당사자와 제3자가 확정재판을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상소심처럼 사실인정이나 일반적인 법률 해석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기존 절차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음. 개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필요하다면 법원행정처 개편,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법관대표기구의 권한 강화 등 어떠한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은 후 사법부는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수평적인 사법행정제도를 구현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비롯하여 그 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모습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개별 재판의 심리와 판단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지만 법관 인사, 법원 예산, 조직 운영 등 사법행정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정적 성격도 갖고 있음. 후보자는 재판작용과 사법행정작용을 구별해 후자의 경우 재판내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회와 국민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 개별 재판의 심리와 판단은 외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만, 사법행정은 높은 투명성과 설명책임이 요구된다는 질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사법행정은 공적 권한과 재원을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그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이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법행정의 투명성은 사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 다만, 사법행정 중에는 법관의 인사와 신분 보장, 사건 배당 등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도 있으므로,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설명책임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최종 임명제청자를 결정하는 권한도 대법원장에게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추천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영향력을 일정 부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여성계 등을 대표하는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 각 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자질 검증이 함께 고려되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대법관은 단순한 법원 내부의 승진 보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질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기관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법관대표기구, 변호사업계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성별·지역·법조경력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은 무엇인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 중 7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10명의 위원은 법조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인사와 학계, 언론계, 여성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회 각 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자질 검증이 함께 고려되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현행 법관 인사는 법원 내부의 근무평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변호사회는 실제 재판과정을 경험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관의 법정 태도, 절차 진행의 공정성, 재판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평가기준의 표준화, 사건 결과에 따른 보복성 평가 방지, 이의절차 마련 등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외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자료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반영함으로써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법원 내·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25. 헌법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규정하는 반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별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행위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도 일정 범위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헌법재판소는 2025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법관은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결합된 별도의 헌법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임. 후보자는 양 제도의 헌법상 문언과 절차구조의 차이가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달리 평가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권'이 별도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협의 또는 재검토 요구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법률상 사전합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여러 헌법기관의 권한이 연속적으로 행사되는 절차인 만큼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은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과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9. 사법부 독립은 개별 재판의 심리와 판단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원칙임. 그러나 대법관 후보 제청절차, 사법행정, 법관윤리·감찰 등은 개별 사건의 재판내용과는 구별되는 영역이라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국회의 출석·설명 요구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개별 재판내용에 관한 답변과 사법행정에 관한 설명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 사법행정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 또는 개별 재판의 심리·판단 등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설명책임의 범위와 방식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0.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대법원장의 제청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는 절차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과 국회의 동의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1. 우리 법제에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협의 관행이 이어져 왔음. 이러한 사전협의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불필요한 갈등과 이견, 우리 법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법관을 조속히 임명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관행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이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다만, 그동안 임명권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청을 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기능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책무와도 관련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공석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법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12.3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침묵하였음.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했다고 보는지?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

○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사실상 침묵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한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는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그러한 역할과 원칙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대법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 등을 종합할 때, 대법원장이 자신의 헌법상・법률상 책무를 방기하거나 유기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대법관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안의 경위 등을 토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단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에 대하여 얼마 전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했음.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해당 사건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총리와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 건 아닌지?

○ 후보자로서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 및 그 당부를 평가하거나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그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특정 사건과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적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자 헌법 제103조의 법관독립을 이유로 심리·판결의 성립 및 선고 경위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사법부가 국민에게 재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심판의 합의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공개가 가능한 재판절차나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이 재판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심리과정이나 그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폐쇄적인 운영이나 불투명성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서도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법관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 재판의 독립이 보호하는 영역은 개별 사건의 심리와 합의, 판단의 내용이며, 법관 인사·예산·조직 운영과 같은 사법행정, 법관윤리와 감찰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와 국민에 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해왔음.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7개월간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특정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정작 대법원 구성과 재판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공석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신속한 재판 원칙에 대한 일관된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12.3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되었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명하며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는 사법부의 의견 개진을 넘어 입법 과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아닌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 제도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필 책무가 있습니다.

○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부분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사법부는 그 과정을 존중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러한 의견 표명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과 방식에 각별히 신중하여야 하고, 입법의 결과가 정해진 뒤에는 그 법률을 존중하고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43.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바 있음.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임. 이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입법부의 정당한 감시와 검증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특정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평가나 의견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 아래에서 입법부의 감시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기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4. 국민의 법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4년부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후보자는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행정과 재판 운영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특정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평가나 의견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법원 내부 설문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는지?

○ 법원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후보자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법부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법원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구속취소 결정과 재판 지연, 법관의 개인적 비위 등 여러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대법원이 해당 법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법관의 직무수행과 품위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적절한 조치를 했으며, 대법원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의견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 비위와 관련하여 법관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에 관하여는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에서는 조사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7.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액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자체감찰에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대법원 자체감찰의 판단과 외부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사실이 있음. 이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대법원 자체감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현재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윤리감사관실의 조사와 관련하여 강제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감사 방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방법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 최종 징계 처분 전 중간적 처분의 가부 및 윤리감사관실의 감사와 사법행정권자의 행정권한과의 관계 정립에 관하여 연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 근무시간 음주·금품수수 등 사법부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며, 사법부 스스로 비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관은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무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법부 내부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은?

○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근면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법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채현일 위원 서면질의》

1.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중점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법적 가치는 무엇이며, 향후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법정책 및 제도는 무엇인지

○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법적 가치로 삼겠습니다.

○ 특히 사회적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질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사법부는 재판지연을 해소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법관 증원, 감정관리제도와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을 추진해 온 것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법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법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다수가 동조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이 남는다면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담대함은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다수에 가려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한자리에 놓고 조율하는 균형감각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법권 역시 그 뿌리는 국민에게 있으므로,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청하는 자세로 저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겠습니다.

3.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세 가지는 무엇이며, 각각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법적 가치는 무엇인지

○ 판사로 28년간 재직하면서 담당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법리 정립, 법적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먼저, 구로동 농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2, 372 병합)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유화되었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이후 그 근거가 된 증인의 위증 유죄판결로 인해 승소가 뒤집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그 위증 유죄판결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지자, 농민들은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는 이례적인 구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후보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십 년 만에 농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가치는 실질적 정의였습니다. 재판의 기초가 된 증언이 국가의 관여로 왜곡되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면 확정된 재심판결이 있더라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깊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도 기억에 남습니다. 포털이 단순한 기사 검색

창구를 넘어 스스로 기사를 선별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정립하였고,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오늘날까지 포털·플랫폼의 명예훼손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가치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사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6857)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가 심사에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개원하여 신입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흠을 지적하는 것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고민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가치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조화였습니다.

4.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건은 무엇이며, 해당 사건을 통해 법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이 문제 되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법리 자체의 복잡함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 자체에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원장의 허가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이러한 사유로 실질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몇 배로 꼼꼼하게 대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 이 사건을 통해, 법관의 역할은 단순히 눈앞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밀한 검증을 통해 사건에 숨어 있는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5. 후보자가 임기 6년의 대법관직을 마쳤을 때 국민과 법조계로부터 어떠한 대법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임기를 마쳤을 때 '당사자가 누구이든 송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고,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한 대법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 저는 재판업무의 좌우명으로 '흠흠'(欽欽)과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을 삼아 왔는데, 이는 사람의 일을 다루는 재판에서 늘 삼가고 신중하며 어떠한 상에도 붙잡히지 않고 담담하게 판단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대법관으로서도 이 다짐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아울러 다수의 그늘에 가려지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준 대법관,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애쓴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는 재판의 내용과 재판절차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수의 관점에 가려질 수 있는 소수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4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장기간의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최근 영화관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재판절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판결의 내용도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선고에서 청각장애인인 당사자들을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한 것도 이러한 사법접근권 보장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법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와 판단 과정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결문의 가독성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판단 과정까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판결서는 당사자를 설득하고 재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므로, 그 내용이 당사자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판결문의 가독성 및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판결서 자체를 보다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법원 맞춤법 자료집', '민사·형사 간결한 판결 사례집', '특허소송 용어집' 등을 발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관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의 판결서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는 그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을 제공하고, 문해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쉬운 글과 그림 등을 활용하여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법원은 판결의 이유와 판단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하여 국민이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과 같은 피고인 신청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죄에 대하여는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제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현재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어 지원 단위 주민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판례 검색, 사건 분류, 재판지원 등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적 판단과 재판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무엇인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법령 · 판례 검색, 사건 분류, 재판자료의 정리 · 요약 등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반복적인 사법행정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기술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재판의 결론은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및 법령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법령 · 판례나 부정확한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 활용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견해

○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면 당사자가 오랜 기간 법적 불확실성과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점에서 재판 지연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지연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충실한 심리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보장하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법관과 재판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사건 배당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건관리와 재판절차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 사건의 심리와 판단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재판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민사·형사·행정사건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경제관계의 복잡화와 분쟁의 전문화에 따른 심리 부담의 증가, 이를 뒷받침할 재판인력과 지원체계의 한계,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의 고령화,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관과 재판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판절차의 효율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대법관 증원과 함께 재판부 운영방식과 사건배당·심리방식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에 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가치관의 충돌이나 기존의 법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전원합의체의 규모도 확대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제약되거나 합의 과정에서 개별 대법관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재판부 운영방안을 면밀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동종·유사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형사사건의 양형이나 민사·행정사건의 판단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이른바 '재판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동종·유사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형사사건의 양형 차이가 발생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판 편차'의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양형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 49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었고,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평균 9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양형위원회가 양형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에 힘쓰고, 법관들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형사사건의 양형 편차는 향후 더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개헌 필요성과 사법 분야의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후보자 견해가 무엇인지

○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결정할 고유한 입법권의 영역인 만큼,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 분야 개헌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사법부의 독립은 개별 재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과 구별되는 사법행정이나 예산 집행의 영역까지 아무런 설명이나 통제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 법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필요한 설명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나 제도 개선 추진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심의와 통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민주적 통제가 개별 사건의 심리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하되, 재판 외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주권자가 헌법에 '법관의 독립'이라는 별도 규정을 둔 것은 법관들이 소신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을 해서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법관은 외부의 평가나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할 뿐 아니라 외부에서 보더라도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정 안팎의 언행을 신중히 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균등한 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판단의 이유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례 변경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천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판례 변경 시에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이익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판례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심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판례의 변경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의 균형을 깊이 성찰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반대의견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며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대법관이 별개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

○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기준이라면,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판결의 다각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사법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본질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관이 소신에 따라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정당한 과정입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치열한 모색은 사법의 신뢰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향후 재판에 임함에 있어 다양한 법리적 가능성을 깊이 성찰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헌법 및 법률 해석이나 권한 범위를 둘러싼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양 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 정립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판단의 차이는 최고 사법기관 간의 헌법상 역할 분담과 해석 권한이 교차하는 사안입니다.

○ 헌법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권한을 각각 부여받고 있으므로, 일방의 우위를 단정하기보다 양 기관의 헌법적 위상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규정을 최우선 기준에 두고 양 기관의 존중과 조화 속에 제도적 보완 방향을 신중히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현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신뢰 저하의 주된 원인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판결, 과거 사법행정을 둘러싼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로서는 이러한 평가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국민이 어떤 부분에서 불신을 느끼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판지연을 줄이고, 판결의 이유를 보다 충실히 제시하며, 국민이 재판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견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헌법상 양 권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대법원장이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지

○ 대법원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특정 정치권력 또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보은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직무수행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려 사법부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 대법관은 어떤 경위로 임명되었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정성의 외관에 대하여도 의심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과 주위를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판단의 이유를 판결에 충실히 밝혀 그 판결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것임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르다면 소수의견을 성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대법관이 누구의 뜻에도 얽매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보여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4. 과거 법원 윤리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관 징계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 국민들은 법관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비위는 사법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징계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보다 높은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받는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윤리를 강화하는 등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법관에 대하여 엄정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 법관에 대한 징계 수준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국민들은 법관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비위는 사법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징계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보다 높은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받는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윤리를 강화하는 등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법관에 대하여 엄정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 법관의 비위에 대한 사법부 내부 감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와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국민들은 법관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비위는 사법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징계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징계양정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보다 높은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받는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윤리를 강화하는 등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법관에 대하여 엄정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 법원의 조직문화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인사구조가 특정 엘리트 법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다양한 직역에서 종사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원 내 조직문화도 개방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법관인사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원의 조직문화와 인사구조 개선에 관하여는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28. 퇴직 대법관 및 고위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의 수임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인식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고위 공직 퇴임 법관이 퇴임 후 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사법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신뢰 증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 형사공탁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 형사공탁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을 일괄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전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변경 후
□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명예훼손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규정에는 해당 범죄군의 특성을 고려한 특유한 문구는 유지하면서 공탁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함

30. 형사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양형위원회에서는 형사공탁과 관련한 양형기준상 내용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1. 사법행정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하는 현행 구조가 재판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은 후 사법부는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수평적인 사법행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제도의 개편 논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 효율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2. 노동·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동법원·환경법원 등 전문법원을 확대·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노동·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건은 노동자의 생계 또는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노동법원·환경법원 등 전문법원의 확대·설치를 통해 해당 분야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분야별 사건의 특성과 규모, 관할, 심급, 설치지역 및 기타 절차 설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전문법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저도 여건이 되는 한 그러한 관심과 논의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 사형제 등 중대범죄에 대한 형벌제도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국민의 법감정·범죄예방·인간의 존엄 및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어떠한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지

○ 살인 등 중대범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형벌은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대한 책임과 응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책임주의와 비례의 원칙, 범죄자의 교화·재사회화 가능성 등 여러 가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직결되고 형이 집행된 이후에는 회복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 존폐나 대체형벌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범죄예방의 필요성, 인간의 존엄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충분한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형동 위원 서면질의》

1.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경우 관할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 등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의 설치 및 승격은 관할인구와 사건 수,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 정도,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전체 관할의 합리적 배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2. 다변화되는 노사관계 및 고용 형태의 변화, 노란봉투법 개정 등에 따라 노동 분쟁이 고도화·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응하여 노동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노동사건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그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퇴직금 청구 등의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단기간 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사법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노동법원 설치와 노동 분야 전문법관 확대를 통해 노동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법원과 노동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 관할, 심급, 설치지역 및 기타 절차 설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비롯하여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저도 여건이 되는 한 그러한 관심과 논의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만국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강민국 위원 서면질의》

1.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견해는?

○ 대법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법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다수가 동조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이 남는다면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담대함은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다수에 가려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한자리에 놓고 조율하는 균형감각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법권 역시 그 뿌리는 국민에게 있으므로,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청하는 자세로 저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겠습니다.

2.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관련 재판 실무 원칙과 구체적 사례는?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도록, 재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소수자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의 헌법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발달·정신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사법지원의 내용과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는 재판 단계별 실무 지침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6. 1. 1.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사법지원 원칙이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바코드 등의 형태로 소송서류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이나 속기를 이용한 문자통역을 지원하며, 지적·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쉬운 용어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신뢰관계인·장애인관련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등 의사소통을 보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35개소), 여러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지원센터(9개소) 등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밖에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일명 '이지리드 판결문')과 점자판

결문의 제공,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도 재판 실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상고심 개편 등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질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과 같은 피고인 신청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죄에 대하여는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제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현재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어 지원 단위 주민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고심은 국민이 최종적인 법률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동시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적 쟁점에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상고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국 사법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이 사법부의 문턱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며, 적시에 실효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과 상고심 제도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재판에 AI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주요 우려사항은?

○ AI 기술은 법령 · 판례 검색, 재판자료의 분류 · 요약 등 재판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AI가 사실과 다른 법령 · 판례나 주장 · 증거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당사자 등이 이러한 자료를 재판에 제출하거나 재판업무에 그대로 활용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I는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생성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 심리 시 지킬 원칙과 기준은?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입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의 이유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위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6.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본인은 진보 성향의 판사인지, 보수 성향의 판사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 저는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규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관을 이념의 좌표에 올려놓고 재단하는 방식은 재판의 실제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법관들은 맡겨진 사건마다 그 사안에 들어맞는 법리를 찾아 결론에 이를 뿐이고, 만약 이념에 따라 답을 미리 정해 두고 기록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재판으로서의 본질을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 제가 법관으로 지내며 내린 판단 가운데에도 보는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처럼 헌법이 보호할 것을 명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결과일 뿐, 결코 저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므로, 앞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 법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 법관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운 좋게도 제1기 공익법무관으로 선발되어, 광주지검과 서울지검에서 국가송무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기간에, 전직 세무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들에게 불하한 다수의 국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 토지대장 등을 위조해 국유지를 편취한 자들로부터 1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거둔 성과는 공익 수호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저의 소명과 목표를 심어준 소중한 자산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법관이 되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8.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그 이유는?

○ 담당했던 많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인터넷종합정보제공 사업자(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사람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악의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9. 존경하는 법조인이나 본받고 싶은 판결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 개인적으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저의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은, 신속(=업무수행능력+성실성)한 재판, 공정한 재판(당사자들에 대한 중립은 물론 정치적 중립도 견지, 절차적 만족감)을 함은 물론이고, 청렴성과 도덕성도 갖춘 소위 '법관다운 법관'입니다. 또한 헌법정신을 재판에 반영해서 재판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부하는 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퇴임 후를 포함해 법조인으로서 앞으로의 개인적 목표는?

○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퇴임 후에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실무경험 등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를 통하여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11.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재판에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은 재판이 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참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은 여론에 따라 결론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국민의 법 감정도 헌법과 법률, 기존 판례에 따른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여론이나 감정적 반응이 재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결국 법관은 헌법과 법률,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함으로써 재판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현실과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국민이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 조치를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로 보는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는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면 제청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을 감행한 배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기존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와 협의 및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 제청은 헌법상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이긴 하나, 실제 제청과정에서 임명권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며, 기존 관례에 따라 임명권자와 협의 및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의 생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그것 또한 조율해가는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14. 대법원 후보자 제청 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필수 요건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이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다만, 그동안 임명권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청을 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정신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의 대폭 증원이 재판 지연 해소라는 순기능보다 사법부의 정치화 및 코드 인사 양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 여부는?

○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또한, 대법관이 26명으로 대폭 증원되더라도, 대법관의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균형감각, 독립성을 충실히 검증하고, 임명된 대법관들도 실제 재판을 통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법왜곡죄' 신설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소신 있는 판단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왜곡죄가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의 결론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법관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정법이 합리적 범위의 법령 해석에 따른 재량적 판단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가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도 충실히 구현되도록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당사자의 비용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당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소위 '사법개혁 3법'이 특정 정치세력·사건 당사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관련 법률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함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공소제기와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과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제도 변화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국민의 권리구제, 공소제기 및 유지에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인권 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에 실제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체포·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으며, 주요 개정규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각 수사기관의 조직과 실무, 현행 제도와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개편인 만큼, 제도 변화로 인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방안과 실무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소의 제기와 유지, 그리고 그 취소는 기본적으로 소추기관의 권한에 속하고 현행 형사소송법도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검사의 공소취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소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의 재판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추권한이 행사된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 사건 이관 요건, 공소취소의 기준과 통제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일반론 외에, 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법률안의 당부나 계속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 적용한 것이라고 보는지?

○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 동안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 '국민의 재판관'으로 남을 것인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 중 하나입니다. 법관이 법과 국민이 아닌 정권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이상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 대법관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칙을 엄격히 지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윤용근 위원 서면질의》

1. 각 근무 법원·재판부별 담당사건 및 주요 판결 목록
   (전체 재직기간 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결과 포함)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산 조회 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판결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지법 및 해남·장흥지원 근무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산 조회 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판결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을 전산 조회한 결과 해당되는 사건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부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판결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판결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첨부한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판결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 사법행정업무 (해당기간, 업무분장표 포함)

○ 해당 후보자는 2020. 2. 13.～2021. 2. 8.까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하여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원 내·외부의 각종 위원회 및 사법행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다만, 수석부장판사의 위와 같은 역할은 개별 업무별로 법관사무분담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중 수행한 사법행정업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재판 및 주요 판결 (해당기간, 목록 및 주요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판결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 당시 담당업무 및 교육·연수자료 (해당기간, 강의·교육자료 목록 포함)

○ 후보자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수석교수 재직 당시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재직기간	보직	담당업무	비고
사법연수원	2023.02.20. ~ 2025.02.09.	수석교수	사법연수원 교수진의 교육·연구업무 총괄·조정, 연수교육 과정 운영 및 개선, 교수회의 운영, 연수생 교육·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사법연수원 위원회 운영, 원장 및 부원장의 교육업무 보좌	

○ 수석교수 재직 당시 교육·연수자료(강의·교육자료 목록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연 수	일 시	강의내용	비고
2023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2023. 11. 8.	법관다움에 관한 고민	별첨 참조
2024	2024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현지연수	2024 8. 19.	한국 영상재판의 과거와 현재	별첨 참조
		2024. 8. 20.	한국의 법관윤리 개관	별첨 참조
	2024년도 일반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2024. 12. 11.	슬기로운 법관 생활	

10. 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담당사건 전체 목록 (해당기간, 사건번호·죄명·선고결과)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법원 내 학술모임·연구단체 가입·활동 내역 (전체 재직기간, 단체명·가입기간·직책·활동내용)

○ 커뮤니티 명칭, 가입일

성명	커뮤니티 명칭	가입일	구분
김성수	항소심재판개선커뮤니티	2020-06-23	정회원
	언론법분야연구회	2009-01-13	정회원
	수도권법원탁구연합회	2024-07-25	정회원
	노동법분야연구회	2016-03-11	정회원
	행정재판커뮤니티	2017-03-21	정회원
	법원관련보도자료	2020-03-13	정회원
	외부기관연계커뮤니티	2019-03-02	정회원
	민사집행법연구회	2006-10-13	정회원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	2018-03-06	정회원
	형사법연구회	2014-06-13	정회원

주 : 커뮤니티 가입 내역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대상임

12. 윤리감사제1담당관·윤리감사심의관 재직기간 및 업무분장표 (해당기간, 전체 업무분장표)

○ 후보자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보직	직책(직위)	재직기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담당관(판사)	2006. 2. ~ 2007. 2. (1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심의관(판사)	2007. 2. ~ 2008. 2. (1년)

○ 후보자는 2006. 2. 20.부터 2008. 2. 20.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의 직을 수행하였고, 윤리감사관 업무 보좌, 윤리감사관실 내 각종 기획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13. 후보자가 직접 조사·검토·보고·결재한 법관·법원공무원 비위사건 전체(해당기간, 사건명·대상자·지위·비위내용·기간·결과)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징계불청구·감찰종결·주의·경고로 종료된 사건(종료사유 포함) (해당기간)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비위사건 및 미통보 사유 (해당기간, 사건별 사유)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법원장·고법부장 등 고위법관 관련 감찰사건 (해당기간, 조사·처리결과)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감찰대상자와 후보자가 과거 동일 법원·재판부에서 근무한 사건(해당기간, 이해관계 및 처리방법)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상급자로부터 조사범위·사건종결·징계수위 관련 지시·의견을 받은 사실(해당기간, 지시자·내용·처리결과)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법원행정처장·차장·대법원장 등에게 보고한 감찰 관련 문건 (해당기간, 문건목록 및 제출 가능한 원문)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후보자 작성·검토·결재 보고서·검토보고서·의견서·회의자료 (해당기간, 목록 및 원문)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재산·외부강의·친족관계·금품수수·전관관계 사건을 조사한 사례(해당기간, 적용 윤리기준 포함)

○ 법원기록물관리규칙(규칙 제3235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감사 관계 문서는 5년간 보존하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도 위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과거 감찰사건에 적용한 윤리기준과 현재 후보자 본인에 적용하는 기준의 동일 여부(현재, 서면답변)

○ 법관으로서의 윤리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후보자 전체 재직기간 중 주요사건 목록(전체 재직기간, 사건번호·사건명·쟁점·선고결과)

○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관련 담당사건 전체 (해당기간, 1·2심 결과 및 판결문)

○ 아래와 같이 비실명화된 판결서 사본을 별첨하여 송부 합니다.

-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60 (25. 5. 16. 선고)
-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60-1 (25. 8. 1. 선고)
-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합60-2 (25. 8. 1. 선고)
- 2. 서울고등법원 2025노2439
- 3. 대법원 2026도999

25. 위 사건의 공동주거침입·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법리 및 양형자료(해당기간, 판단근거 및 양형요소)

○ 이 사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에 침입하여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으로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 후보자가 참여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가 2025노2439 사건으로 병합심리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헌·위법하여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9. 5.선고 99도3865판결)가 제시한 저항권의 요건, 즉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항고 등 적법성을 다툴 법적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의 요건(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자 구조 목적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 침입의 주된 목적이 위난을 피하는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일률적인 형을 선고하지 않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개별적으

로 심리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는 실형이 유지되었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형량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법원의 헌법상 기능이 물리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6.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죄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전산 조회한 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판결문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비실명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송부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실명조치 된 판결문 사본을 별첨하여 송부합니다. 그 외 첨부된 판결목록을 참조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6노987
- 서울고등법원 2026노1076
- 서울고등법원 2026노1196

27.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관련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담당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은 1건입니다. 별첨과 같이 비실명된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28. 과거사·국가배상·재심 관련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요청하신 재심사건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산 조회 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국가배상 사건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판결문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비실명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송부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실명조치 된 판결문 사본을 별첨하여 송부합니다. 그 외 첨부된 판결목록을 참조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노6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재누57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나505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나512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나536

29. 환경·폐기물시설·행정처분 관련 담당사건
(전체 재직기간, 목록 및 판결문)

○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후보자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취소·변경·파기환송된 사건 (전체 재직기간, 원심·상급심 결과와 사유)

○ 요청하신 판결목록은 재판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 이후의 것부터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산 조회 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변경·파기환송 사유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판결문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비실명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송부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실명조치 된 판결문 사본을 별첨하여 송부합니다. 그 외 첨부된 판결목록을 참조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나1207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나1641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487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845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906
-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21
- 서울고등법원 2016누73964

- 서울고등법원 2017누44239
- 서울고등법원 2017누45188
- 서울고등법원 2017누59125
- 서울고등법원 2024노2625
- 서울고등법원 2025노867
- 서울고등법원 2025노1244
- 서울고등법원 2025노1289
- 수원고등법원 2022노232

31. 대법원 판례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은 판결(전체 재직기간, 관련 판례·결정 포함)

○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변호사회·학계 등이 후보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 (전체 재직기간, 관련 논평·자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33. 정치인·정당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
(전체 재직기간, 일시·장소·참석자·목적)

○ 해당사항 없습니다.

34. 국회의원·대통령실·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로부터 재판·인사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전체 재직기간, 상대방·내용·처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5. 담당사건 관련 외부 청탁·압력·탄원 등을 받은 사실
(전체 재직기간, 처리내역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36. 다른 법관에게 특정사건 처리·결과 관련 의견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전체 재직기간, 사건·상대방·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7. 법원장·법원행정처·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담당사건 관련 의견·요청을 받은 사실(전체 재직기간, 사건별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8.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현재 재산 및 연도별 재산변동 (최근 10년,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대상자이었을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료제출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재산공개대상자기간 동안의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내역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후보자·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의 구체적 형성과정 (취득~현재, 취득금액·자금출처·증여·상속)

○ 후보자 소유의 함평 농지는 집안 대대로 소유해 온 농지로, 후보자의 부친께서 1984년 별세하신 후 후보자가 부친 소유의 토지 중 일부 농지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후보자 재산 중 아파트 보증금 3억 5,000만 원은 급여소득 및 은행대출금, 장인·숙부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통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자녀들의 재산은 2017년 처남(자녀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장모(자녀들에게 각 2,000만 원)로부터 증여받은 돈, 장남의 군복무 급여(매칭지원금 약 600만 원 포함), 용돈 등을 모아 장기간 조금씩 매수한 주식과 예금 등입니다. 주식 취득에 실제 투입된 돈은 장남 약 2,700만 원, 장녀 약 1,100만 원 정도(2025년 12월까지 기준)이며 재산신고액의 대부분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 그 밖의 재산 내역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및 공통요구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매도 현황 (최근 20년, 주소·취득/매도일·금액·자금출처)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최근 10년간 소유한 내역이 있는 부동산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최근 10년 이전의 자료와 직계존속 관련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없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유상태	부동산 종류	부동산 표시내역	조회 명의인	현행	폐쇄
1	현재	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447-1 답 729㎡	김성수	O	O
2	현재	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449-1 답 312㎡	김성수	O	O
3	현재	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450-1 답 1173㎡	김성수	O	O
4	현재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451-4 임야 192㎡	김성수	O	O

※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등기기록을 조회한 결과이므로, 명의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된 등기기록의 경우는 조회결과에 나타나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후보자·배우자의 전체 임대차계약 현황 (최근 20년, 보증금·월세·기간·갱신)

○ 후보자는 2011년 처남으로부터 역삼동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처남이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410동 404호를 전세보증금 17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3년 5월 같은 아파트 410동 904호를 전세보증금 14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2025년 5월 전세보증금 15억 2,250만 원(5% 증액)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처남과 후보자 가족은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위 도곡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위 역삼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함), 처남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증빙서류는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11년 임대차계약서’, ‘2011년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2021년 임대차계약서’, ‘2021년 전대차계약서’, ‘2023년 임대차계약서’, ‘2023년 전대차계약서’, ‘2025년 임대차계약서’, ‘후보자 계좌이체내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택청약 신청·당첨·취소 내역 (전체, 청약주택·일자·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43. 2011년경~2021년 역삼동 아파트 임대차 및 갱신계약서 전체 (2011~2021, 최초 계약~퇴거까지)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11년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위 아파트가 처남 소유였던 기간의 등기부 및 소유권 변동 (해당기간, 등기부등본)

○ 별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후보자가 처남에게 지급했다는 보증금 3억5천만원 지급자료 (최초 지급시점, 후보자·배우자 출금 및 처남 입금자료)

○ 공통요구자료 중 '2011년 전세보증금 지급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보증금 3억5천만원의 자금출처(당시, 예금·대출·재산자료)

○ 후보자가 2006년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2011년 숙부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2013년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급여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빙자료는 공통요구자료 중 '2006년 차용 사실확인서', '2011년 차용증', '2013년 차용증' 및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관련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거주기간 중 보증금 증감·월세·관리비 등 지급내역 (2011~2021, 계좌거래 증빙)

○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계약조건이 유지되었고, 관리비 등은 후보자가 지출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공통요구자료의 '2011년 전세보증금 지급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후보자·배우자와 처남 사이 전체 금전거래 (2011~2021, 대여·채무·증여 포함)

○ 역삼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공통요구자료의 '2011년 전세보증금 지급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거래 내역에 관하여는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 2021년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경위 (2021, 관련 설명·자료)

○ 2021년 처남이 다니던 회사의 본사가 판교에서 역삼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처남도 주거지를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면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살던 역삼동 아파트는 좁아서 처남까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후보자의 장모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남에게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 것을 권유하였고(당시 후보자의 장모는, 원래 친구를 좋아하는 처남이 경제적 여유까지 생기자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이 때문에 누나의 관리, 감독 하에 두겠다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장모의 권유로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가족이 살던 기존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도곡동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50. 도곡동 아파트 원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2021~현재, 원 소유자-임차인 계약)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21년 임대차계약서’, ‘2023년 임대차계약서’, ‘2025년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처남이 원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월세 (2021~현재, 금융거래 증빙)

○ 처남이 2021년 6월 도곡동 아파트 410동 404호를 전세보증금 17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3년 5월 같은 아파트 410동 904호를 전세보증금 14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2025년 5월 전세보증금 15억 2,250만 원(5% 증액)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21년 임대차계약서', '2023년 임대차계약서', '2025년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후보자와 처남 사이 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계약자료 (2021~현재, 계약서·확인서 일체)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21년 전대차계약서’, ‘2023년 전대차계약서’, ‘후보자 계좌이체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보증금·월세·관리비·기타 주거비 (2021~현재, 월별 지급내역)

○ 후보자는 도곡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역삼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함), 처남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 역시 후보자가 지출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후보자 계좌이체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원 임대료와 후보자가 처남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 (2021~현재, 연도별 비교표)

○ 후보자는 전세보증금 17억 원(2023년 이후 14억 5,000만 원, 2025년 이후 15억 2,25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처남에게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후보자가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은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는 아니고, 처남이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이 미안하여 전세보증금의 절반 정도의 금액에서 후보자가 부담한 3억 5,00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하여 연 2% 정도(처남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달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대출금리가 아니라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율을 고려한 것입니다)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 실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적은 부담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55. 전대차·공동거주에 대한 원 임대인의 동의 여부 (2021~현재, 동의서 등 증빙)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명확히 알렸고, 2023년 임대차계약서에는 '처남 및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23년 임대차계약서' 참조).

56. 후보자와 처남의 실제 공동거주 여부 확인자료 (2021~현재, 전입·입주·차량·주차등록 등)

○ 처남은 2021년부터 후보자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고, 2023년 별도 거주를 위하여 잠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있으나 두 달여 만에 다시 도곡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 미혼 성년인 처남이 필요에 따라 업무공간 등으로 오피스텔을 가끔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주거지를 옮겼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주민등록표등본(후보자)', '주민등록표초본(처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후보자와 처남의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생활비 부담내역 (2021~현재, 월별 자료)

○ 관리비는 후보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증빙자료는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8. 도곡동 임대차 관련 후보자-처남 간 문자·이메일·협의자료 (2021~현재, 관련 자료 일체)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된 ‘2021년 전대차계약서’, ‘2023년 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협의는 가족 간에 구두로 이루어져 별도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특수관계인 간 저가 임대·전대에 따른 세무·법률자문 내역 (관련기간, 자문기관·내용·결과)

○ 후보자는 2011년 역삼동 아파트 임차 및 2021년 이후 도곡동 아파트 거주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세무·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세법상 증여의제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0. 위 임대차 관련 증여세·소득세 등 수정신고 및 납부내역 (2021~현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61. 최근 15년간 친족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용·거주한 사례(최근 15년, 시가 및 실제 지급액)

○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위 보증금은 계약 당시 시세에 부합하는 금액이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전세 시세가 상승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조정하지 않고 거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처남이 임차한 도곡동 아파트에 처남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실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적은 부담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62. 후보자 보유·보유했던 전체 토지 현황 및 등기부등본 (전체, 함평·고창 토지 포함)

○ 후보자가 최근 10년간 소유한 내역이 있는 부동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및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유상태	부동산 종류	부동산 표시내역	조회 명의인	현행	폐쇄
1	현재	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447-1 답 729㎡	김성수	O	O
2	현재	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449-1 답 312㎡	김성수	O	O
3	현재	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450-1 답 1173㎡	김성수	O	O
4	현재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451-4 임야 192㎡	김성수	O	O

※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등기기록을 조회한 결과이므로, 명의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된 등기기록의 경우는 조회결과에 나타나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토지별 취득일·원인·금액·자금출처·현재 이용현황 (전체, 토지별 구분)

○ 후보자 소유의 함평 농지는 집안 대대로 소유해 온 농지로, 후보자의 부친께서 1984년 별세하신 후 후보자가 부친 소유의 토지 중 일부 농지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당시 후보자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시면서 후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창 토지 역시 후보자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인데, 실제로는 종중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토지의 존재에 대하여 2019년경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상속토지의 피상속인·공동상속인·지분 및 상속세 신고자료 (해당기간, 관련 증빙)

○ 함평 토지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고창 토지는 후보자의 모친, 형제자매가 함께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후보자 지분 2/12).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창 토지는 실제로는 종중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매매취득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자료 (해당기간, 계좌자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66. 농지·임야 직접 경작·관리·임대·위탁 현황
(전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 후보자 소유의 농지는 모친이 경작하시다가(형님도 몇 년간 함께 경작하였습니다) 모친의 건강 악화로 지금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전문 농업인에게 경작을 맡기고 있습니다.

67. 토지 취득 전후 인근 개발계획·도로·산업단지·도시계획 변경자료(취득 전후, 업무상 정보취득 가능 여부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68.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전체 주식거래 내역 (최근 15년, 종목·수량·매수/매도일·금액)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자녀들의 주식은 2017년 후보자의 처남과 장모가 증여한 돈(처남이 각 1,000만 원, 장모가 각 2,000만 원을 증여, 공통요구자료에 첨부된 ‘2017년 자녀 증여내역’ 참조), 장남의 군복무 급여(매칭지원금 약 600만 원 포함), 기타 용돈 등을 모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매수한 것으로,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된 돈은 장남 약 2,700만 원, 장녀 약 1,100만 원 정도이며(2025년 12월까지 기준), 자녀들 재산신고액의 대부분은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69. 후보자·배우자의 비상장주식·펀드·사모펀드·채권·파생상품 거래(최근 15년, 상품별 구분)

○ 해당사항 없습니다.

70. 후보자 담당사건 기업 또는 계열사 주식을 후보자·가족이 보유한 사례(전체 재직기간, 사건 및 보유기간)

○ 해당사항 없습니다.

71. 주식 보유 등을 이유로 사건 회피·재배당을 요청한 사례 (전체 재직기간, 사건번호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후보자·배우자·자녀가 동일 종목을 보유하게 된 경위 (전체,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포함)

○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의 종목은 모두 장남이 선정하였습니다. 장남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조금씩 투자하겠다는 생각에서 종목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73. 후보자·배우자·자녀 사이 주식·현금 계좌 간 이전내역 (최근 15년, 가족 간 이전)

○ 후보자, 배우자 및 자녀 사이에 일상적인 용돈 지급 등 외에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는 증여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74. 후보자·배우자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최근 15년, 금융기관·금액·금리·용도·상환)

○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후보자 및 가족의 사인 간 채권·채무 현황
(최근 15년, 거래경위·상환내역)

○ 후보자는 2006년 장인으로부터 5,000만 원, 2011년 숙부로부터 5,000만 원, 2013년 장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 2006년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200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전보되었고, 안양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 2011년 숙부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1기)로 선발되어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숙부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입니다.

○ 2013년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후보자는 위 돈을 차용하여, 위 전세보증금 마련 등에 이용한 마이너스 통장 등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공직을 마치는 시기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하였고,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를 당연히 채무로 인식하고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세무사와 상의하여 증여세 등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후보자의 재산공개대상자기간 동안의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내역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친족으로부터 무이자·저리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
(최근 15년, 계약서·이자·상환자료)

○ 제75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장남·장녀의 현재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과 취득경위 (전체, 취득일·단가·수량·재원)

○ 후보자 자녀들은 2017년 후보자의 처남과 장모가 증여한 돈(자녀들에게 처남이 각 1,000만 원, 장모가 각 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별첨 '2017년 자녀 증여내역' 참조), 장남의 군복무 급여(매칭 지원금 약 600만 원 포함), 기타 용돈 등을 모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였고,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된 돈은 장남 2,700만 원, 장녀 1,100만 원 정도이며(2025년 12월까지 기준), 자녀들 재산신고액의 대부분은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 처남과 장모가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위 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금액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 후보자 자녀들의 예금은 정기예금, 저축예금 및 증권계좌 예수금 등으로, 앞서 설명한 돈을 토대로 조금씩 적립하여 모은 것입니다.

78. 장남·장녀 주요 주식 최초 취득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 (전체,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금융재산 현황
(해당기간, 예금·주식·펀드)

○ 제77항에 대한 답변 및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후보자·배우자가 자녀 명의 금융거래를 대신한 내역
(전체, 매수·매도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81. 후보자·배우자가 자녀에게 현금·주식 등을 증여한 내역 (전체, 증여일·금액)

○ 후보자 및 배우자는 자녀에게 일상적인 용돈 등 외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후보자의 재산공개대상자기간 동안의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신고내역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장모·처남 등 친족이 후보자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 (전체, 동일)

○ 후보자의 자녀들은 2017년 처남으로부터 각 1,000만 원, 장모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17년 자녀 증여내역' 참조).

○ 처남과 장모가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위 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금액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83. 자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전체

(전체, 증여자·재산·금액·세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자녀의 연도별 소득과 재산증가액 비교자료 (2010~현재, 연도별 표 제출)

○ 장남과 장녀 모두 현재 대학생 신분이며, 장남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군복무로 급여(매칭지원금 약 600만 원 포함)를 지급받은 것 외에 자녀들의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녀들 재산의 대부분은 2017년 후보자의 처남과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처남 각 1,000만 원, 장모 각 2,000만 원), 위 군복무 급여, 용돈 등을 모아 매수한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식 취득에 실제 투입된 돈은 장남 약 2,700만 원, 장녀 약 1,100만 원 정도(2025년 12월 기준)이고 재산신고액의 대부분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입니다.

○ 공통요구자료에 첨부한 '2017년 자녀 증여내역',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자녀 자체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증가분 및 재원 (2010~현재, 건별 소명)

○ 제84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친족이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교육비 중 재산형성에 사용된 금액(최근 15년, 용도별 구분)

○ 제84항에서 말씀드린 후보자 처남과 장모의 2017년 증여 내역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7. 친족이 자녀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 이상 거래
(최근 15년, 송금자·금액·일자)

○ 제84, 86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후보자·배우자의 연도별 총소득
(2010~현재, 근로·이자·배당·기타·퇴직소득)

○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대상자이었을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료제출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재산공개대상자기간 동안의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신고내역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후보자·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자료(2010~현재, 연도별)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별표 1]에 따라, 회계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인바, 후보자의 소득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 2026년 현재).

90.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세·지방세 납부·체납내역 (최근 10년, 세목별)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내역 (전체, 관련 증빙)

○ 해당사항 없습니다.

92. 연말정산 과다·부당공제로 추가납부·추징된 내역
(최근 10년, 사유·금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93. 후보자·배우자의 기부금 납부 및 소득공제 내역 (최근 10년, 기부처·금액)

○ 수원고등법원 재직기간(21. 2. 9. ~ 23. 2. 19.) 내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연한 5년 이내의 자료(2021년~2025년도)의 기부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속년도	기부자	기부처	금액(원)	제출법원
2021	김성수	국가보훈처[급여공제]	20,000	수원고등법원
	김성수	강남세움근로사업장굿윌스토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37,900	
	김성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1,340,000	
	합 계		1,917,900	
2022	김성수	국가보훈처[급여공제]	30,000	수원고등법원
	김성수	강남세움근로사업장굿윌스토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56,000	
	김성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190,000	
	합 계		2,596,000	

○ 2023년(사법연수원 재직) 후보자 및 배우자의 기부금 납부내역(기부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기부일	기부단체	기부금액(단위: 원)	기부자	근무법원
기부금	-	국가보훈처	25,870	후보자	사법연수원
기부금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3,000,000	후보자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41,600	후보자	

구 분	기부일	기부단체	기부금액(단위: 원)	기부자	근무법원
기부금	2023.1.1. ~ 2023.12.31.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210,000	후보자	
기부금	-	함평군청	100,000	후보자	
기부금	-	에이디알에프 인터내셔널	360,000	배우자	

○ 서울고등법원 재직기간 동안 후보자 및 배우자의 기부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속년도	기부자	기부처	금액(원)
2024	후보자	대한적십자사	10,000
	후보자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138,000
	후보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420,000
	후보자	함평군청	100,000
	김유진 배우자	에이디알에프 인터내셔널	120,000
	합 계		2,788,000
2025	후보자	대한적십자사	20,000
	후보자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104,000
	후보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210,000
	후보자	함평군청	100,000
	합 계		2,434,000

○ 후보자의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후보자·배우자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 변동자료 (2010~현재, 연도별)

○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및 '재산관련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가족의 연도별 주거비 지출현황
(2010~현재, 보증금·월세·관리비·이자)

○ 후보자 가족의 2010년 이후 주거비 지출은 앞서 임대차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거주하였고,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도곡동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처남에게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거주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처남에게 매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96. 처남·장모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사용이익·채무면제 등을 받은 내역(최근 15년, 경제적 이익별)

○ 앞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7. 후보자·배우자와 양가 부모·형제자매 사이 1천만원 이상 금전거래(최근 15년, 송금·대여·상환)

○ 앞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8. 배우자의 학력 및 전체 경력(전체, 퇴직일, 퇴직금 수령내역 등 증빙)

○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99. 연도별 소득·재산변동 및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최근 10년, 연도별)

○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대상자이었을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료제출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재산공개대상자기간 동안의 후보자 재산신고내역은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관보 게재 내역 이외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직계비속의 학력·경력·현재 직업·직장·직위 및 입사경위 (전체, 자녀별)

○ 후보자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1. 직계비속 장학금 수령내역(전체, 기관·시기·금액·선정기준)

○ 후보자의 장녀는 ‘한성 손재한 장학회’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위 장학재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장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장 추천(학교 성적순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받아 지원했고, 면접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102. 직계비속 해외유학·연수 내역(전체, 국가·기관·기간·비용부담자)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3. 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역사항(전체, 병역판정·입영·전역·복무 내역)

○ 후보자의 장남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104.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국적 및 국적변동(전체, 변동사유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5. 후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전체 재직기간,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6. 후보자가 경고·주의·구두주의·인사조치 등을 받은 내역 (전체 재직기간, 사유·처분)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7. 법원 내부 감사·감찰·진정·민원·탄원 대상이 된 사건 (전체 재직기간, 사건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8. 감사원·권익위 등 외부기관 조사·감사 내역 (전체,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9.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또는 고소·고발 내역 (전체, 사건·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0. 후보자가 당사자인 민사·형사·행정소송 (전체, 사건번호·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1.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수정·보완·정정한 내역 (전체, 수정사유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2. 재산등록 누락·오류로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 (전체, 요구기관·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3. 임차보증금 신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위 등의 확인·보완요구 (2011~현재, 관련 문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4. 법관 재직 중 외부강연 내역(전체 재직기간, 기관·주제·강연료·신고)

○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	직급	성명	강의요청기관	강의내용	강의장소	강의일시	보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법부장)	김성수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법업무 디지털화를 위한 인적 역량강화 2년차 초청연수 (국별보고, AP발표, 종합토론 등)	사법연수원	2023. 8. 7. 15:30 ~ 16:30	766,080원 (2회분)
						2023. 8. 18. 10:00 ~ 11:50	

○ 외부강의 신고서, 겸직허가 신청서 등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에 관련된 자료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3235호)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이 5년으로 그 이전 내역은 폐기되어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기고문·도서·논문·연구보고서 전체 목록 (전체, 원문 또는 사본)

○ 요청하신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	자 료 명	저자명	게재지명	출판사	권호사항	발행년	원문
1	사례를 통한 비전형적(非典型的) 퇴직금(退職金)제도의 고찰	김성수	재판실무 연구	광주지방법원	2003	2004	○
2	특수신분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판례를 중심으로	김성수	재판실무 연구	광주지방 법원	1998	1999	○
3	국가소송길잡이(증보판) : 제1장 집필진으로 참여			서울지방 검찰청		1997	
4	「형사항소심 판결작성실무(개정판)」 :집필진으로 참여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 개선위원회	사법발전 재단		2015	
5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집필진으로 참여			사법연수원		2019	

○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나타난 후보자의 저작물 2건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 후보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국가소송길잡이」(1997), 「형사항소심 판결작성실무」(2015), 「재판업무길라잡이 형사편」(2019)는 소장·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116. 외부위원회 활동내역

(전체, 기관·기간·역할·수당)

○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겸직(직위취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요청기관	내용	신청날짜	보수
겸직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2023.2.27.	없음

○ 외부강의 신고서, 겸직허가 신청서 등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에 관련된 자료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3235호)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이 5년으로 그 이전 내역은 폐기되어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법인·재단·사단법인 등의 고문·이사·자문 활동 (전체, 활동 및 보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8. 공개 SNS 게시물(최근 10년, 게시일·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9. 후보자·배우자와 처남 사이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최근 20년, 전체 거래)

○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0. 후보자·배우자와 장모 사이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최근 20년, 전체 거래)

○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1. 처남·장모 소유 카드·자동차·회원권·부동산 등을 사용한 사실 (최근 20년, 사용시간·대가)

○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2. 친족이 가족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차량비·여행비 등을 대신 부담한 사례(최근 20년, 항목별 금액)

○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3. 친족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내역(최근 20년, 정상가격 대비 비교)

○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 후보자 가족과 처남·장모 가족의 공동명의 재산(전체, 금융·부동산·보험·회원권)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5.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이후 후보자·배우자·자녀 재산변동(추천이후~현재, 예금·주식·부동산)

○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이후 후보자·배우자·자녀의 재산 변동은 급여의 입금과 생활비 지출, 보유 주식의 평가액 변동 등 통상적인 변동 외에는 없으며, 부동산의 취득·처분은 없습니다.

○ 다만, 후보자는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 중 2023년 12월 이후 지급하지 못하였던 미지급액을 최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126. 추천 이후 증여세·소득세 등을 추가·수정 신고한 사실(추천이후~현재, 신고일·세목·금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7. 추천 이후 친족 간 채권·채무 및 금전거래를 정산한 사실 (추천이후~현재, 관련 자료)

○ 후보자는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 중 2023년 12월 이후 지급하지 못하였던 미지급액을 최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공통요구자료 중 '후보자 계좌이체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추천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신규작성·변경한 사실 (추천이후~현재, 변경 전·후 계약)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9. 추천 이후 처남과 임대차 관련 계약서·확인서·차용증 등을 새로 작성한 사실(추천이후~현재, 작성일·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130. 대통령실·대법원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재산·임대차·증여세 등 소명요구 받은 자료(후보검증기간,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131.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법부·재판 독립의 의미 및 제도적 개선방안(현재, 서면답변)

○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좌우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여론은 물론 사법부 내부의 인사나 행정적 영향으로부터도 개별 재판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 제도적으로는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 사건배당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사회의 등을 통해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법관이 보직이나 인사를 의식하지 않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관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고, 충실한 심리와 설득력 있는 판결을 통해 독립된 재판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임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2.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인사권과 개별 법관의 재판독립 관계 (현재, 서면답변)

○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은 사법부 및 개별 법관의 독립을 수호함과 동시에, 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관 인사, 보직, 사무분담과 같은 사항은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의식하게 될 경우 독립적인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행정과 재판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사건의 심리나 결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확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 결국 대법원장의 권한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관이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3. 법원행정처 권한·조직 개편 및 법원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현재, 서면답변)

○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지원하고 사법부 전체의 조직·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이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사법행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중요한 제도 변화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도 이러한 방향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법행정의 민주성은 단순히 의사결정 주체를 늘리거나 다양화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고, 결정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재판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4.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서면답변)

○ 법관인사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인사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이를 통해 인사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인사업무의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의 적정성, 기밀성 및 법관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기준 공개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이 심리와 합의, 판결서 작성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충실한 심리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잦은 전보인사로 인한 심리의 단절을 막고 법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였고, 법관인사 이원화의 근간인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과 조기 퇴직 등의 사유로 법원을 이탈하지 않도록 잦은 순환 근무를 축소하였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심리는 물론 재판의 신속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문법관제도를 시행함에 더해 가사소년사건에만 실시되고 있던 전문법관제도를 의료·건설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의 주된 역할은 사법의 본질인 재판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의 성과와 한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원이 이상적인 기능조직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재의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5. 전관예우 존재 여부와 수임·취업제한 강화에 대한 견해 (현재, 서면답변)

○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퇴직 후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위 법조인이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자신이 재직 기간 중 쌓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관예우의 논란 등으로 말미암아 사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입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고위직 판검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신뢰 증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기피와 회피 제도의 활성화, 연고관계 재배당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소송관계인과 법관의 기일 외 의사소통금지,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하여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도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6.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과 구체적 기준
(현재, 서면답변)

○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관 구성과 관련하여 법관으로서 축적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변호사·교수 등 여러 직역에서 쌓은 경험과 관점도 대법원 재판에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출신학교, 지역, 성별, 직역, 법조인 여부 등과 같은 형식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여러 가치관과 관점이 재판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다양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천거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원 외부 인사와 비법조인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관 구성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다양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보장하고, 제청·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7. 대법관 증원 및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
(현재, 서면답변)

○ 현재 대법원은 방대한 상고사건의 부담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최고법원·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상고심 재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건처리 변화와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고제도 개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8.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안
(현재, 서면답변)

○ 재판지연은 어느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최근 사건이 복잡·전문화되면서 장기간 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증가한 점, 증거조사와 감정절차의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의 평균 연령과 경력이 높아지는 등 재판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점은 재판지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와 민사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의료감정제도 개선 등 사건관리와 재판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9. 법관의 정치적 중립 및 SNS·정치적 표현 허용범위 (현재, 서면답변)

○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므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법관은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스스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장차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후보자는 공정성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활동도 자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스스로의 처신부터 엄격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 AI·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와 사법부 대응방향
(현재, 서면답변)

○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한편으로는 딥페이크 범죄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도 정비되는 등 사법적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하여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나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사용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하여 범죄가 보다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제와 양형기준을 적절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범죄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과 재판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재판,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과 야기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합니다.

○ 또한, 법관이 신종범죄 수법과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관연수를 강화하고, 감정 등을 통해 영상·음성 등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 아울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과 피해자 신원 보호 등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41. AI를 재판·사법행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현재, 서면답변)

○ AI 기술은 법령 · 판례 검색 지원, 재판자료의 분류 · 요약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하고, 통계 · 행정자료의 정리 등 반복적인 사법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AI가 사실과 다른 법령 · 판례나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AI는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AI가 생성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2.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질서 충돌 시 판단기준 (현재, 서면답변)

○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양한 의견 표명과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가급적 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타인의 기본권 침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의 정당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저한 위험'의 존재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수단 역시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결국 두 가치의 충돌은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균형 있게 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할 때 기본권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두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3.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건에서 법원의 권리구제 원칙 (현재, 서면답변)

○ 법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공권력 행사에 외형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 과정 전반이 헌법적 가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고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가 다해야 할 핵심적 역할이자 헌법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은 늘 성찰하며 실효적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144.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원의 역할 (현재, 서면답변)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나 다수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정치적·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거나, 경제력과 정보력 및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어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 물론 법원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와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 및 관련 법률의 보호 취지가 재판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14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허위정보 규제 간 판단기준 (현재, 서면답변)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가치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이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표현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6. 국민 여론과 법률적 판단이 충돌할 때 법관의 태도 (현재, 서면답변)

○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한 결론을 지켜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다수가 동조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이 남는다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재판으로서의 본질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여론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권의 뿌리도 국민에게 있으므로 법관은 자신의 판단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해석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 여론이나 어느 한쪽의 기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결국 법관의 태도는 판단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면 왜 그러한 결론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인지를 판결에 정직하게 담아 설명하고, 그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결론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르는 것이 법관이 지켜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147. 대법원 다수의견과 본인의 법률적 소신이 다른 경우 별개의견·반대의견 제시 여부(현재, 서면답변)

○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기준이라면,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판결의 다각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사법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관이 소신에 따라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정당한 과정입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치열한 모색은 사법의 신뢰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향후 재판에 임함에 있어 다양한 법리적 가능성을 깊이 성찰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 대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3가지 및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현재, 서면답변)

○ 대법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법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다수가 동조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이 남는다면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그 담대함은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다수에 가려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과,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한자리에 놓고 조율하는 균형감각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위와 같은 자질에 부합하는지는 스스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1995년 공익법무관으로 국가송무를 담당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약 28년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업무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서 법관 연수와 후배 법조인 교육에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생활상과 사법부의 안팎을 두루 경험하였습

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이든, 송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임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 경청하는 자세를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경청하는 자세로 저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하겠습니다.

149. 대법관 임명 시 중점을 둘 법률·사법정책적 과제 (현재, 서면답변)

○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법적 가치로 삼겠습니다.

○ 특히 사회적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질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사법부는 재판지연을 해소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법관 증원, 감정관리제도와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을 추진해 온 것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 과거 선고한 판결 중 현재 판단이 달라졌거나 아쉬움이 남는 판결(현재, 서면답변)

○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사건 가운데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담당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여 여러 차례 변론을 속행하면서 신중하게 증거조사를 한 끝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신중한 심리를 거쳐 적정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뒤에 항소심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피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금으로 인한 생활고가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자책하였고, 결론이 옳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이 당사자에게 정의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그 사건 이후 후보자는 결론은 신중하게 내리되 재판의 신속성 확보에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가장 소중한 가르침으로 삼아 왔습니다.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함께 지키는 것이 당사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151. 후보자 자신의 사법철학과 판결성향에 대한 평가 (현재, 서면답변)

○ 후보자는 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과 법리는 정교해야 하지만 그 정교함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삶과 동떨어진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얇든 두껍든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으므로 예단 없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재판을 시작하려 노력하였고, '당사자가 누구이든 송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 판결성향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후보자는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규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관을 이념의 좌표에 올려놓고 재단하는 방식은 재판의 실제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포함한 법관은 맡겨진 사건마다 그 사안에 들어맞는 법리를 찾아 결론에 이를 뿐이고, 이념에 따라 답을 미리 정해 두고 기록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재판으로서의 본질을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 후보자가 내린 판단 가운데에도 보는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처럼 헌법이 보호할 것을 명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결과일 뿐,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므로, 앞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152. 법률 문언과 구체적 정의가 충돌할 경우 대법관의 태도 (현재, 서면답변)

○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법률의 문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한 규범이고, 국민은 그 문언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므로, 법관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법률의 문언은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안 앞에서 불완전할 수 있고, 문언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법률이 본래 실현하려던 목적이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법관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법률 체계,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가장 알맞은 해석을 찾아야 하며,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길을 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그럼에도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이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판결에서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여 입법으로 해결되도록 하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헌법이 마련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언에 대한 충실과 구체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하나를 택할 문제가 아니라 사건마다 신중하게 조화시켜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153.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사건의 정치적 영향 배제방안 (현재, 서면답변)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입니다.

○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 어느 쪽의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판단의 이유를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그 판결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것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54. 정치권·행정부 등이 대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대응 방안(현재, 서면답변)

○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것이 형해화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중대한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사법부는 이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헌법이 부여한 최고법원의 지위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시도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 동시에 사법부는 헌법이 맡긴 사명을 스스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여야 합니다. 판결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충실히 설명하고 법정 안팎에서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처신할 때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 신뢰가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55.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대법관'의 기준
(현재, 서면답변)

○ 좋은 대법관의 기준은 앞서 대법관의 자질에 관하여 말씀드린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내는 담대함과 그 판단을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과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조율하는 균형감각이 그것입니다.

○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좋은 대법관은 상고한 당사자의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살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일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제시하는 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편리한 결론을 좇지 않고 훗날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지를 따져 보며, 낯설고 서툴러 보이는 주장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지키려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판결은 선고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반복하여 다시 읽히면서 검증받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하는 대법관, 그리고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대법관이 좋은 대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56.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현재, 서면답변)

○ 대법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다툼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법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다수가 동조하더라도 스스로 의문이 남는다면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담대함은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는 겸손함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다수에 가려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 서로 어긋나는 가치를 한자리에 놓고 조율하는 균형감각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법권 역시 그 뿌리는 국민에게 있으므로,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청하는 자세로 저 자신을 계속 다듬어 가겠습니다.

157. 대법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현재, 서면답변)

○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법적 가치로 삼겠습니다.

○ 특히 사회적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질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사법부는 재판지연을 해소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사법부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법관 증원, 감정관리제도와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을 추진해 온 것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8. 청와대의 김성수 후보자 제청 수용과 손봉기 후보자 제청 거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현재, 서면답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이재명 재판 중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6조 적용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현재, 서면답변)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가 공소의 제기만을 뜻하는지, 이미 제기된 공소에 따른 재판의 계속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헌법학계의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에 따른 재판 정지에 위 조항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 제84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할 재판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은? (현재, 서면답변)

○ 제159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헌법 제10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각각 관여하도록 한 헌법적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62. 동법 동조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단순한 절차적 권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인간?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에까지 관여하면 삼권분립정신 훼손인가, 아닌가?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제청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나?

164-1.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나?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 대통령의 반복적인 임명 거부 또는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허용되는 임명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경우, △거부 횟수 △거부 사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제청 요구 여부 △정치적 목적의 유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 구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대법원장은 헌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나?

167-1. (그렇지 않다면) 두 기관의 관계를 어떻다고 생각하나?

○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갖는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며, 국회의 동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인사를 검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헌법상 권한 간의 상하관계를 논하기보다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서로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8.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협의 또는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의 판단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되는 반면, 법관은 다르다는 근거로, 이른바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헌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므로, 법원은 그 헌법상 권한과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한편, 헌법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심판을 법원에 맡기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관해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및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결국 각 국가기관의 관계는 문제 되는 권한의 성격과 헌법상 권한 배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가기관 사이의 추상적인 우열관계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권력분립 원리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나?

○ 권력분립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헌법 원리입니다.

○ 권력분립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 역시 어느 한 국가기관에 우월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상호 견제의 원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결국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리로서 함께 해석되고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 다수당(대통령 포함)이 선거 결과나 국민 다수의 의사를 근거로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나?

○ 우리헌법은 국가권한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면서, 이 중 사법부는 다수의 의사로 구성된 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결단한 헌법상의 설계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더라도,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부의 독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법원의 재판은 정치적 다수의 의사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결국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부의 독립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라기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72. 국민 다수의 여론과 법관이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 대법관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 대법관은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에게는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내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 다만 이는 여론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법관이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거듭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법률의 해석에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시대의 변화를 헤아리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헤아림도 헌법과 법률의 문언과 체계, 확립된 법리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론에 이른 이유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여론과 다른 결론에 대하여도 승복을 구하는 것이 대법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73.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이후,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에 법률상 문제는 없는가?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반복될 경우, 향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뿐 아니라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게 될 위험이 어떤게 있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사법부 인사 독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추천절차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갖는 법적·제도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구라고 생각합니다.

177.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완료된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특정인을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대통령이 기존 추천 후보군 가운데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한다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 및 후보자 선택권을 대통령이 사실상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대통령이 후보군의 범위와 최종 후보자 선택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 헌법 제40조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상당 부분이 국회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역시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한계를 받는다고 보나?

○ 사법제도에 관한 상당부분은 국회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입법적 판단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회의 입법권 역시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인 만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의 원칙은 입법자가 사법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존중하여야 할 헌법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181.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이른바 법왜곡죄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입법이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나?

○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적법절차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그 입법이 사법제도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국회에는 사법제도를 형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폭넓은 입법권이 있으므로 그 입법적 판단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개별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은 그 명분이나 입법 동기에 관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 국민의 권리와 재판의 독립에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 경과조치와 권리보호 장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2. 사법개혁 입법의 실제 목적이나 효과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법관을 압박·위축시키거나 △특정 정부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력분립 및 사법부 독립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사법제도를 형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에 따른 입법이라면, 새로운 법률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거나 대법원의 인적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어느 법률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법률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정에 기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입법에도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나?

○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관 정원을 포함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조직을 정하는 데에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입법형성권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대법관 정원에 관한 입법 역시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184. 재판 적체 해소나 사건 증가 대응과 같은 사법행정상의 필요가 아니라 특정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 가능한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변경하는 것이 대법관 증원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된 이후에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합니다. 이러한 헌법상 임명절차와 법관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 대통령의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이 임명된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또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단기간에 변경되더라도, 대법관의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균형감각, 독립성을 충실히 검증하고, 임명된 대법관들도 실제 재판을 통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5.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권력분립 및 헌법 제101조·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과 법관 독립을 침해하여 위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헌법은 법원의 조직과 대법관의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관의 수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입법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질의에서 전제하신 상황을 가정하여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대법관 증원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증원의 규모와 속도 △사건 수 및 업무량 등 객관적 필요성 △입법 추진 시점 △입법 목적 △특정 대통령의 추가 임명 가능 인원 △대법원 구성에 미치는 효과 등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심리를 통하여 판단될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대법관은 자신을 제청한 대법원장,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또는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국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보나?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은 자신을 제청한 대법원장, 임명한 대통령,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국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대법관의 임명에 세 기관의 관여를 함께 요구한 것도 대법관이 어느 한 기관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188.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론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면 그에 따라 판결하겠나?

○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법 앞의 평등은 재판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고,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결론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에 따라 재판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89. 정부의 핵심 정책에 관한 사건에서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이나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법률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후보자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겠나?

○ 정부의 핵심 정책에 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은 그 정책의 당부가 아니라 문제된 처분이나 법률관계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후보자는 정책의 필요성이나 국정철학과 법률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법률의 문언과 체계, 확립된 법리를 넘어서는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다만 법률이 행정에 재량과 정책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 영역에서는, 법원이 행정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법률이 정한 한계와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는 사법심사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와 행정부의 몫이고, 법원은 그 정책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190. 국회 다수당이나 국민 다수의 여론이 특정한 재판 결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103조에 따라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할 수 있나?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입니다. 법관은 사건의 기록과 법리에 집중하여, 설령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이 된다면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그 이유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이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91.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사법적 독립성이란 무엇이며, 후보자 본인은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자세와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기 바람.

○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사법적 독립성이란, 헌법 제103조가 정한 바와 같이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자신을 제청·임명·동의한 기관, 정당과 여론, 각종 이해집단,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어떠한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립은 법관을 우대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안전장치이므로, 그 최종적인 수혜자는 법관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 후보자는 이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와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누구든 송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지키고, 사건의 정치적 파장이나 당사자의 지위, 결론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재판의 고려요소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둘째, 여론의 다수가 반대편에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키되, 자신의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기록을 끝까지 살피며 거듭 되돌아보겠습니다. 셋째, 법정 밖에서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언동에 주의하여 재판의 독립이 외관에서도 의심받지 않도록 하고, 판단의 이유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여론

과 다른 결론에 대하여도 승복을 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법부의 독립은 결국 하나하나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192.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이라고 보나?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의 기능을 지키기 위하여 재판 경험과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잘 살필 수 있는 자리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보나?

○ 제192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나?

○ 대통령의 임명권을 포함하여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헌법의 기본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헌법해석의 문제이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무제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 또는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면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대통령께서 재제청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숙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국민주권 원리 또는 선거 결과를 근거로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나?

○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리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은 모두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고, 어느 것 하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 대통령과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헌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나?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헌법기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 국회의 입법권은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받는다고 보나?

○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요청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평가는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대법원 인적 구성 변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 국회가 결정한 증원 입법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판단될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후보자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면 외부의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보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 중 하나입니다.

○ 대법관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칙을 엄격히 지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대법원장·국회·정당 또는 여론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할 수 있나?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 중 하나입니다.

○ 대법관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칙을 엄격히 지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

1. 헌법 제104조 제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각 어떠한 성격과 한계를 가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의 기능을 지키기 위하여 재판 경험과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잘 살필 수 있는 자리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하고, 그 한계는 결국 헌법이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을 통해 지키려는 가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은 대법관 임명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재제청 요구'를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그 상호관계에 비추어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협의가 헌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헌법기관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임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합니까?

○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 사전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앞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된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법원장이 동시에 제청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일부 후보자만 국회에 보내고 나머지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합니까?

○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그 상호관계에 비추어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특정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다양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임명권자의 판단 사유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대통령의 임명 여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가려 뽑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재판이 법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을 낳고 결국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자격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 재판경험과 법률가로서의 역량 및 인품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후보자 스스로도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 자신을 규정하여 본 일이 없으며, 맡겨진 사건마다 그 사안에 들어맞는 법리를 찾아 결론에 이르는 것이 법관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11.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제청·임명권 충돌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명권과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청권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과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법원의 구성이 지체됨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국가기관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의견 불일치는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사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한 국가기관 간의 조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장이 응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권력분립 원칙과 임명 절차의 해석을 두고 다양한 법리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로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 헌법기관 간의 존중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다시 사실상 선별하는 구조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각계의 천거를 받아 심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구로서,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에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추천과 제청,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 각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몫을 다할 때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절차 운영에 대한 평가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재판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 대법관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의 헌법상 의무를 가집니다.

○ 따라서 대법관 후보자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그 임명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임명절차가 이와 같을 때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고 국민들로부터 재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 대통령 또는 국회의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동의안 제출·처리에 법정기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최고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사법적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기한은 마련되어 있으나, 임명동의안 제출 및 최종 처리 시기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법정기한 도입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과 국회의 헌법상 임명동의 절차가 가지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6.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가 헌법상 법관 독립 원칙과 양립한다고 생각합니까?

○ 「형법」 제123조의2가 신설·시행되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제도까지 도입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점에 있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다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법관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이고,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 원칙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정법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17. 법률해석의 오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법 왜곡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법관의 법률해석이나 사실인정이 상급심의 판단과 다르거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판단 당시의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의 경위와 내용,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순한 해석상 오류와 의도적인 법 왜곡을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법왜곡죄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재판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관하여 미리 단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법왜곡죄가 법관의 소신 있는 법률해석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법왜곡죄가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됐다는 이유로 하급심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것은 상소제도를 통하여 법률해석과 사실인정의 잘못을 심사·시정하는 사법절차의 한 과정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관의 형사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순히 판결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반복된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상소절차가 아니라 법관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의 독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 여부는 판결의 파기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목적과 의도성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 수사기관이 판결의 법률해석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법관이 재판에서 한 법률해석의 당부 자체를 수사기관이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가 운용된다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해석이나 사실인정의 잘못은 원칙적으로 상소 등 재판절차를 통하여 심사·시정되는 것이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입니다.

○ 법왜곡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이 형사책임의 문제로 전환되어 재판의 독립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법왜곡죄가 유지된다면 구성요건과 고의의 인정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현행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과 의도적인 법령 오적용 등을 요구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법률해석과 재판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재판행위에도 법왜곡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현행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의 직위나 심급만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다만,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의 재판행위는 헌법상 독립이 보장되는 사법작용인 만큼, 법왜곡죄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한 법률해석의 차이나 사실인정의 오류와 의도적인 법 왜곡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정상적인 법률해석과 재판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법관과 검사에게 동일한 법왜곡죄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각각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현행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통된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정의에 반하는 의도적인 법 왜곡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관은 헌법상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권의 담당자이고, 검사는 공소제기·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서로 다른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같은 구성요건을 적용하더라도 각 직무의 성격과 권한 행사 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향후 법왜곡죄 운영 과정에서 재판 독립 침해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우선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합리적 법률해석에 관한 제외 규정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충실히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이 반복적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난다면, 제도의 운용 실태와 재판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성요건의 명확화나 적용범위 조정, 나아가 폐지 여부는 실제 운용 결과와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5.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부여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러한 헌법상 권한 배분과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 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입법적 결정을 존중하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재판소원 제도 자체에 대한 당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당사자의 비용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당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이 설치한 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같은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8. 재판소원의 심판 범위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재판소원의 심판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9. 재판소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현행법상으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있고, 이는 해외의 주요 재판소원 도입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결의 확정력은 법적 안정성의 요체인 만큼, 재판소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30. 재판소원이 재판의 확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재판의 확정성과 법적 안정성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확정된 재판을 신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는 재판소원을 통한 기본권 구제와 함께 이러한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성과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화로운 법리적 해석을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31.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충돌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판단 충돌 문제는 최고 사법기관 간의 헌법상 역할 분담과 해석 권한이 교차하는 사안입니다.

○ 헌법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권한을 각각 부여받고 있으므로, 일방의 우위를 단정하기보다 양 기관의 헌법적 위상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규정을 최우선 기준에 두고 양 기관의 존중과 조화 속에 제도적 보완 방향을 신중히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 현재 14명인 대법원장·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합니다.

○ 대법관 증원을 통하여, 개별 대법관의 사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사건의 심리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상고심의 재판 지연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하여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하여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과 상고허가제 등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것 가운데 어느 방안이 상고심 적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상고심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인 반면,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상고허가제 등 상고제한제도 도입은 각기 상고심 개편을 위한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더 효과적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4. 대법관이 26명으로 확대될 경우 현행 전원합의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전원합의체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제약되거나 합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단기간에 다수의 대법관을 특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가 대법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자격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 재판 경험과 법률가로서의 역량 및 인품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대법관 임명에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의 계속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 및 범위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보장과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이 충돌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 제84조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누구도 법의 적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요청입니다.

○ 두 가치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각 헌법 조항이 가진 취지와 보호범위, 다른 헌법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 문제가 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밖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합니까?

○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이 있다면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2.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 제11조가 선언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는 재판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재판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판결의 이유를 국민들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그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임명된 이후에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예정한 임명절차에 따른 것이고, 임명된 대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법관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법적·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4.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관에게 제척·기피 사유가 없더라도 자발적 회피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 역시 형사소송법상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사건과의 구체적인 관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을 통하여 판단될 사항이므로, 특정 법률을 전제로 한 의견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구속영장 청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으며, 주요 개정규정은 2026. 10. 2.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각 수사기관의 조직과 실무, 현행 제도와의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7.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2026. 8.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 간 권한과 업무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것으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사건처리의 신속성,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소재, 피해자 구제와 공소유지를 위한 충분한 증거확보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함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공소제기와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과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제도 변화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국민의 권리구제, 공소제기 및 유지에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경찰 등의 수사가 부실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법적 근거는 삭제되었으나, 공소제기와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권한을 배분하고 상호 통제하도록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이후 공소기관이 수사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보완할 것인지는 양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이 적절히 보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와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부실이나 증거 누락으로 억울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구체적인 권한과 업무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행정의 영역에 속하지만, 제도 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실무절차와 업무처리기준이 충실히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으로서는 영장심사와 공판절차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증명력을 충실히 심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52. 수사·기소 분리 이후 법원의 영장심사 기능과 증거능력 심사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수사와 공소의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심사와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체계 하에서 법원의 권한을 더 넓히거나 심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가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등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심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부족한 수사를 보충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기관으로서 영장심사와 증거법칙에 따른 사법적 통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53.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도 각 기관에서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별·절차별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수사·공판 등 개별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이후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도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을 폐지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감독의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다만 어떠한 제도를 취하더라도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형사사법체계가 단기간에 크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 공백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형사사법체계의 조직과 권한 배분은 기본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영역이지만,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재판절차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절차, 사건기록의 송부와 접수, 증거조사 등 변경된 법률에 맞추어 필요한 규칙·예규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관과 직원이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기록의 이관·연계 등 절차적 사항을 원활히 협의하여 재판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6. 현재 국민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까?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 지연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권리는 제때 구제될 때 비로소 실질을 갖는 것이고, 결론이 늦어지는 재판은 당사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국민의 호소는 사법부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건 수의 증가와 사건 내용의 복잡화, 법관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원은 심리 방식의 효율화, 사건 관리의 개선, 사법정보화 등을 통하여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7.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사건 증가, 법관 부족, 재판 운영방식, 법관 인사제도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말씀하신 요인들은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수가 늘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데 비하여 법관의 수는 충분히 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재판부 구성과 인사제도의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본적으로는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집중심리와 사건관리 절차의 효율화, 법관이 한 재판부에 오래 머물며 사건을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사건의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처리기간은 법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처리기간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법원도 그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가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속한 재판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재판기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충실한 증거조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법행정 차원에서도 재판부가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판지원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9. 법정 처리기간이나 합리적 재판기간을 반복적으로 넘긴 재판에 대해 별도의 관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신속한 재판은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장기간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정한 기간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지연원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재판은 각 사건마다 쟁점의 난이도, 증거의 양, 피고인 또는 소송당사자의 수 등 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재판기간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충실한 심리와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재판에 대한 별도의 관리 • 평가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관리 • 평가 제도를 두기보다는, 장기화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연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60. 장기미제 사건의 보유 건수와 처리기간을 법관 인사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판사에 대한 평정은 그 기준과 절차가 현재「법원조직법」 및「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구체화되어 있고,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율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5조제1항).

○ 법관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법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후보자 역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6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정책법원으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과 중요한 법적 쟁점의 판단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다수의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접수되는 상고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재판 지연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가 상고기각의 이유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 심리불속행제도의 취지와 대법원의 현실적인 사건처리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심리불속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2. 대법원이 중요한 법률문제에 집중하도록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대법원은 과도한 상고사건의 부담으로 인하여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고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상고심의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게 하는 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 상고제한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찬반의 입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대법관 증원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대법원의 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3.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법관·재판연구 인력을 늘리는 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고제한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다수의 상고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는 것은 100여 명의 법관 재판연구관과 30여 명의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대법관과 긴밀히 협업하며 사건을 연구·검토하는 체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상고심 재판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판연구관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관 재판연구관의 증원이 사실심을 담당하는 숙련된 법관 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되고 재판 지연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심의 재판역량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만큼, 1·2심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사실심의 사건 적체가 심화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심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급심 법관 인력 확충을 비롯한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영상재판·전자소송·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상재판은 비대면 방식의 기일 출석에 따른 기일 공전 방지, 비용 절감으로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이고, 전자소송은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이동시간 및 행정 대기 소요시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위한 핵심 절차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은 법률정보 검색 및 리서치, 소송자료 요약, 쟁점 정리 등의 작업을 지원하여 법관이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판단 등 보다 중요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5.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발생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의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임 대법관의 제청절차를 적기에 진행하여 가급적 공석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이고, 그 행사에 앞서 대국민 천거 및 의견수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법관 공석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성과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의 성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 및 후보자 검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66.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은 단순히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은 법령과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법관으로서의 품위와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높은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 법관이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얻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법관윤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가족 사이에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8.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세법상 성격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에 비추어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9.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약정된 대가가 실제로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유상거래로 인정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처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0.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한쪽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세법상 증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1. 타인의 재산을 제3자가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법률상 필요한 경우, 그 동의는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도곡동 아파트 계약체결 전 임대인에게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알렸고, 임대차계약서에 그와 같은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2. 법관이 친족으로부터 주거·생활비 등 장기간 반복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직접 현금을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법관윤리와 이해충돌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을 이해충돌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등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3. 고위공직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납세의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회성 착오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의 경우 처남과의 관계에 있어 세법상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납부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4. 인사청문 과정에서 뒤늦게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계약관계를 정리하면 과거의 도덕성·적격성 문제도 모두 해소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국회와 국민들께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5.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와 국민에게 자신의 재산·세금·가족관계와 관련한 해명을 할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되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6.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한 해명이 이후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기억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되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동안 밝힌 내용 가운데 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이를 숨기지 않고 바로잡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 법관의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이 누락된 경우 단순 보완만으로 종결하는 것과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공직자의 가상자산 누락에 대한 처분은 고의성 여부와 누락규모, 은닉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8. 법관의 친족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법관이 그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관련 업종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서 정한 신고·회피, 재배당 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관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금전 이해관계뿐 아니라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이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민사소송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의 제척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기피와 회피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직접적인 금전 이해관계에만 한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법관이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친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기피 또는 회피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80.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윤리·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관이라면 스스로의 재산·납세·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법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는 윤리감사심의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1.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상호주의의 적용, 국민주권과의 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제도는 지역 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며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구성원에게 지방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자치 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동시에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시각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국민적 수용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회와 사회 각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2.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현행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여부는 국회에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장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의 위축 등 부작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83.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폐지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사형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권의 본질과 국가형벌권의 한계,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피해자의 고통이 함께 얽힌 문제여서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폐지하는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수단을 도입할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4.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해지는 경향이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청소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되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교화하여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 결국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5.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과 조합원별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026. 3.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는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개정 법률 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포털·SNS·온라인 플랫폼이 명백한 허위정보나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 현재보다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6. 7.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방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온라인 유통 정보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포털 등의 책임을 강화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책임을 강화할 경우 공익 제보나 정당한 비판까지 검열·삭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 법률의 시행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털 등의 책임을 규정할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 허위정보·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표현의 자유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 허위정보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는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법원은 개별 사건이 주어졌을 때 표현의 공익성과 침해된 법익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88. 국가보안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율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반면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형사법률이고, 과거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인지는 국가안보상의 필요성, 남북관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 적용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89.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해석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인지는 표현의 내용과 문맥, 발언의 경위와 전달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개별 사건의 표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재판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하여 미리 단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부정부패·선거범죄 등 공직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으로서 국민 통합, 국가의 이익, 인권 존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고,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정부패·선거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상 사면권의 취지와 법치주의의 요청,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정치관여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 의미와 무게를 새겨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정한 주장이나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 선언하는 가치와 질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기준은 어떤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에서 법원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사법기관 보호 사이의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근본요소이므로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유가 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될 경우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가 참여한 서부지법 사건 항소심은 이러한 원칙이 문제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던 만큼 보시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후보자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고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판단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습니다.

93.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생성형 AI·SNS 시대의 플랫폼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할 당시 포털사업자가 단순히 기사가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기사를 선별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보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생성형 AI와 SNS가 일상화된 지금,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존 포털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게시물 게시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고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물을 것인지는 기술의 작동 방식, 국내외 입법례,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결국 플랫폼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의 개별 판단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4. 후보자는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로동 농민들의 재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길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재심요건이나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구로동 농지 사건에서 후보자가 마주한 문제는 국가가 위증을 교사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을 근거로 재심판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 이는 법원이 국민을 외면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길을 열었습니다.

○ 다만 재심요건이나 기간을 일반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폭넓게 완화할 경우 오히려 법적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고, 유사한 사안이라도 국가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국 이 문제는 개별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구제수단을 사실상 가질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5. 후보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건에서 지역주민의 민원만으로 공익상 필요한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전체 사회의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떠한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후보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건에서 막연한 불안감과 구체적으로 증명된 피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시설은 이미 산업단지계획에 적법하게 포섭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계획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 없이 시설 자체가 가진 막연한 위해 가능성만을 근거로 설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넘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사회 전체의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원칙을 미리 정해두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주민들이 실제로 제기하는 우려가 막연한 불안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것인지, 그 시설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사안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 결국 이 문제는 개별 사건에서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나 계획에 대한 신뢰와 전체 사회의 공익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6. 후보자가 약 28년의 법관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 3건과 각각의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법적 가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8년간 판사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사명으로 재판을 하였기에 선고한 모든 판결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아래 세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첫째, 구로동 농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2, 372 병합)입니다. 일제강점기 국유화되었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훗날 그 근거가 된 증인의 위증 유죄판결로 인해 승소가 뒤집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그 위증 유죄판결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지자, 농민들은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는 이례적인 구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후보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십 년 만에 농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가치는 국가권력에 대한 실질적 통제였습니다.

○ 둘째,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책임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입니다. 포털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별하는 경우에는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세웠고,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가치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였습니

다.

○ 셋째, 로스쿨 예비인가 사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6857, 대법원 2009두8359로 확정)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함께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가치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조화였습니다.

○ 국가권력에 대한 실질적 통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 법적 안정성과 공공복리의 조화라는 이 세 가지 가치는 앞으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임할 때에도 변함없이 지켜나가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97. 후보자의 판결 가운데 상급심에서 결론 또는 주요 법리가 변경된 사건 중 후보자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가 참여한 판결 중 대법원에서 일부 법리가 정리된 사례로,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 산업기술의 조직적 유출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며 견해의 대립이 있었지만, 후보자가 참여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공범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를 별도의 침해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리 적용에 대법원은 다른 견해를 채택하였지만, 실질적인 유죄 판단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급심이 하급심의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심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며,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확립된 법리를 앞으로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98.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판례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판례변경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와 관련되어 있어, 그 기준을 미리 도식화하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판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시대의 변화나 구체적 정의의 요청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는 해당 판례가 다루는 영역과 그로 인한 영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판례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를 통해 여러 대법관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이 문제는 개별 사안이 놓인 구체적 맥락과 기존 판례에 기대어 형성된 법률관계의 정도를 충실히 살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9. 대법관이 자신의 소신과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법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5조는 대법원 재판서에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를 검증하는 기능과 함께 훗날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법관은 다수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이유를 성실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수의견의 논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함께 소수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면 합의와 토론에 성실히 참여하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확신하는 바가 다르다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100. 대통령·정부·국회 다수당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건을 맡더라도 임명권자나 정치적 파장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률과 증거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약속드립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원칙입니다.

○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이든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단의 이유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위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